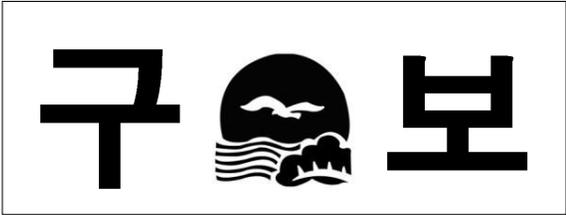


인천광역시 중구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결	기 관 의 장



제 966 호

2019년 7월 29일 월요일

차 례

조 례

-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339호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
-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340호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
-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341호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19
-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342호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24

규 칙

- 인천광역시중구규칙 제943호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 29

고 시

- 인천광역시중구고시 제2019-121호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월미1지구) 지형도면 고시) ... 35
- 인천광역시중구고시 제2019-122호 (도시관리계획(월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38

회 람									
--------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중구

편집 : 홍보체육실

○인천광역시중구고시 제2019-123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84

공 고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19-981호 (자동차 운행정지 등록) 86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19-100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 계획 인가 재공고·열람)
..... 87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19-1011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 및 사업인정에 관한
공고·열람) 96

조 례

제 명 :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개정사유

건축물관리자의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기준을 수립(신설)하여, 폭설시 적절한 제설작업을 통해 적설로 인한 지붕면 붕괴 위험을 예방하여 주민의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건축물관리자의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작업 책임범위 신설(안 제5조3항)
- 나. 제설·제빙 작업에 대하여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와 지붕면으로 구분하고, 제설 제빙 작업 시기에 대하여 구체화(안 제6조)
- 다.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2조제2호·제3호·제5호, 제8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홍 인 성

2019년 7월 29일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1339호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 중 “공작물”을 각각 “인공구조물”로 한다.

제3조 중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를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및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다.

제5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시설물의 지붕

- 가. 최상층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가 수행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2. 지붕에 쌓인 눈: 별표 1의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제빙 기준 적설량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의 제목“(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를“(제설·제빙작업의 도구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비치하고”를 “갖춰 두고”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지붕면의 제설·제빙 기준 적설량(cm)

건축구조기준(KBC 2015, 국토교통부) <그림 0304.2.2> 기본지상적설하중 (kN/m ²)	적설량		제설·제빙 시점 적설량		비 고
	기본지상적설 하중 적용 환산 적설량 (cm)	특정 지형조건 (고지대, 산간지방) 가중치(1.5배) 적용 환산 적설량 (cm)	기본지상적설 하중 적용 환산 적설량 (cm)	특정 지형조건 (고지대, 산간지방) 가중치(1.5배) 적용 환산 적설량 (cm)	
0.5이하 지역	50.0	75.0	25.0	37.5	인천
0.5초과 1.0이하 지역	55.0	82.5	27.5	41.3	
1.0초과 1.5이하 지역	63.0	94.5	31.5	47.3	
1.5초과 2.0이하 지역	67.0	100.5	33.5	50.3	
2.0초과 2.5이하 지역	70.0	105.0	35.0	52.5	
2.5초과 3.0이하 지역	84.0	126.0	42.0	63.0	
3.0초과 3.5이하 지역	98.0	-	49.0	-	
3.5초과 4.0이하 지역	112.0	-	56.0	-	
4.0초과 4.5이하 지역	126.0	-	63.0	-	
4.5초과 5.0이하 지역	140.0	-	70.0	-	
5.0초과 지역	140.0	-	70.0	-	

* 기상예보 강설량이 A~Bcm일 경우 제설·제빙 기준 예보강설량은 (A+B)/2로 본다.
 * 최소지상적설하중은 0.5kN/m²이상으로 한다.(KBC 2009)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u>공작물</u> 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 ----- ----- <u>인공구조물</u> ----- -----.
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u>공작물</u> 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 ----- <u>인공구조물</u> ----- -----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u>공작물</u> 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5. ----- ----- <u>인공구조물</u> ----- -----.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제3조(제설·제빙 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u>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u> 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3조(제설·제빙 책임) ----- ----- <u>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및 시설물의 지붕</u> -----.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 ----- -----.

□ 제 명 :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사유

- 가. 「인천광역시 중구 한중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폐지 및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한 박물관·전시관 운영 관련 조례 일원화
- 나. 박물관·전시관의 어린이 관람료 감면을 통한 문화시설 향유 기회 증대 도모
- 다. 매점,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항목을 신설하여 박물관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관람료 면제 대상 조정(안 제5조)
 - 1) 36개월 이하 면제 ⇒ 12세 이하 면제
 - 2)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무료관람 조항 신설
- 나. 「인천광역시 중구 한중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폐지 및 조례 통합에 따른 관람료 및 대관료 정비(안 제1조, 제9조 별표1호, 별표3호)
- 다.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45조)
-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대상 용어 정비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홍 인 성

2019년 7월 29일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1340호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9호 중 “보호자를 동반한 36개월”을 “만 12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일반관람객에게도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중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인천개항박물관: 기획전시실
- 2. 대불호텔전시관: 연회장
- 3. 영종역사관 : 기획전시실, 세미나실, 다목적영상실

제9조제2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한중문화관(본관): 지하1층 회의실, 1층 갤러리, 2층 회의실, 4층 공연장 및 부대시설
- 5. 한중문화관(인천화교역사관): 1층 갤러리, 2층 전시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불응한”을 “응하지 않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사고가 있을 때”를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로 한다.

제29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범위 안에서「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45조를 제46조로 하고,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편의시설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박물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박물관 내·외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매점(자동판매기를 포함한다.)

2. 기념품점

3. 부설주차장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박물관 관람료와 별도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부설주차장 이용료 및 운영은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별표 1,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중구 한중문화관 관리·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인천광역시 중구 한중문화관 관리·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표 1]

박물관 관람료

구 분		관 랑 료				비고
		성인 (만19세 이상)	청소년 (만13세-18세)	군인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포함)	어린이 (만12세 이하)	
인천개항장 근대건축전시관	개인	500원	300원	300원	무료	
	단체	300원	200원	200원	무료	
인천개항박물관	개인	500원	300원	300원	무료	
	단체	300원	200원	200원	무료	
짜장면박물관	개인	1,000원	700원	500원	무료	
	단체	800원	500원	400원	무료	
대불호텔전시관	개인	1,000원	700원	500원	무료	
	단체	800원	500원	400원	무료	
한중문화관	개인	1,000원	700원	500원	무료	
	단체	800원	500원	400원	무료	
영종역사관	개인	1,000원	700원	500원	무료	
	단체	800원	500원	400원	무료	
5개관 통합관람시	개인	3,400원	2,300원	2,100원	무료	
	단체	2,800원	1,700원	1,400원	무료	

※ 단체 : 20인 이상

※ 5개관 통합관람 대상 박물관 : 인천개항장 근대건축전시관, 인천개항박물관,
짜장면박물관, 대불호텔전시관, 한중문화관

[별표 3]

박물관 대관료

구 분	시설명(규모)	시간	사용료	비 고	
인천개항박물관	기획전시실 (1층-54㎡, 2층-54㎡)	1일	40,000		
대불호텔전시관	연회장 (133.27㎡)	1일	50,000		
한중문화관 (본관)	4층 공연장 (611㎡)	오전	40,000	○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사용료의 20%를 가산 ○ 공연장 1시간 이상 초과사용 시 다음 회 사용료 전액을 가산 ○ 연속 5일 이상 대관 시 총 사용료의 10% 감면 ○ 부대시설 사용료 별도 산정	
		오후	60,000		
		야간	80,000		
	2층 회의실 (54㎡)	오전	30,000		○ 연속 5일 이상 대관 시 총 사용료의 10% 감면
		오후	30,000		
	1층 갤러리 (225.6㎡)	1일	80,000		○ 연속 10일 이상 대관 시 총 사용료의 10% 감면
지하1층 회의실 (68.4㎡)	오전	30,000	○ 연속 5일 이상 대관 시 총 사용료의 10% 감면		
	오후	30,000			
한중문화관 (인천화교역사관)	1층 갤러리 (157.8㎡)	1일	60,000	○ 연속 10일 이상 대관 시 총 사용료의 10% 감면	
	2층 전시실 (326.36㎡)	1일	120,000		
영종역사관	기획전시실 (180.54㎡)	1일	30,000원		
	세미나실 (37.48㎡)	1일	30,000원		
	다목적영상실 (70.31㎡)	1일	50,000원	장비시설사용 포함	

※ 기준시간(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 오전 : 09:00 ~ 13:00
- 오후 : 14:00 ~ 18:00
- 야간 : 18:00 ~ 22:00
- 1일 : 09:00 ~ 18:00

한중문화관 4층 공연장 부대시설 사용료

구 분	단 위	사용료(원)	비 고	
냉·난방기	1회	20,000	냉방기	7월~8월 의무사용
			난방기	11월~3월 의무사용
프로젝트	1회	20,000		
음향시설				
마이크	1회/3개	10,000	추가 시 1회 / 1개당 5,000원	
PIN마이크	1회/1개	10,000		
피 아 노	1회	30,000	* 조율 필요 시 대관자 부담	
드럼 SET	1회	50,000		
앰프/스피커	1회	80,000		
신디사이저	1회	30,000		
LED전광판	1회	10,000		
무대조명				
기본	1회	20,000	콘솔 기구로 조종되는 조명 연출 필요시 사용료 징수	
무빙라이트 Spot	1일 1대	5,000		
무빙라이트 LED Wash	1일 1대	5,000		
Heizer Machine	1일 1회	20,000	액상포함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관람료) ①·② (생 략)</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p> <p>1. ~ 8. (생 략)</p> <p>9. <u>보호자를 동반한 36개월 이하의 어린이</u></p> <p>10. (생 략)</p> <p><신 설></p>	<p>제5조(관람료)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p> <p>1. ~ 8. (현행과 같음)</p> <p>9. <u>만 12세</u> -----</p> <p>10. (현행과 같음)</p> <p>④ <u>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일반 관람객에게도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u></p>
<p>제6조(관람권) ① (생 략)</p> <p>② 관람권의 규격, 기재사항, 단체관람의 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u>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u></p>	<p>제6조(관람권)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규칙으로 정한다.</u></p>
<p>제9조(대관의 허가와 범위) ① (생 략)</p> <p>② 대관할 수 있는 박물관 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p> <p>1. <u>인천개항박물관 : 기획전시실(1층-54㎡, 2층-54㎡)</u></p> <p>2. <u>중구 생활사 전시관 1관(대불호텔 전시관) : 기획전시실(133.27㎡)</u></p> <p>3. <u>영종역사관 : 기획전시실(180.54㎡), 세미나실(24석, 109.42㎡), 다목적영상실(40석, 70.31㎡)</u></p> <p><신 설></p>	<p>제9조(대관의 허가와 범위)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u>인천개항박물관: 기획전시실</u></p> <p>2. <u>대불호텔전시관: 연회장</u></p> <p>3. <u>영종역사관 : 기획전시실, 세미나실, 다목적영상실</u></p> <p>4. <u>한중문화관(본관): 지하1층 회의실, 1층 갤러리, 2층 회의실, 4층 공연장 및 부대시설</u></p>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11조(대관허가의 제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대관시설을 훼손하고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자</p> <p>2. 3. (생 략)</p> <p>제19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촉 및 당연직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p> <p>② ~ ④ (생 략)</p> <p>제20조(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생 략)</p> <p>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u>사고가 있을 때</u>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23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u>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u>,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②·③·④ (생 략)</p> <p>제29조의2(명예관장) ① ~ ⑤ (생 략)</p> <p>⑥ 구청장은 명예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p>	<p>5. <u>한중문화관(인천화교역사관): 1층 갤러리, 2층 전시실</u></p> <p>제11조(대관허가의 제한) ① ----- ----- -----.</p> <p>1. ----- ----- <u>응하지 않은</u> -----</p> <p>2. 3. (현행과 같음)</p> <p>제19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 ----- ----- <u>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u></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20조(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u>-----.</p> <p>제23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 ----- <u>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u>-----.</p> <p>②·③·④ (현행과 같음)</p> <p>제29조의2(명예관장)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 ----- <u>위촉 해제</u> ----- -----.</p>

현행	개정안
<p>1. ~ 3. (생략)</p> <p>⑦ (생략)</p> <p>제33조(평가위원회 개최 및 경비지원) ① (생략)</p> <p>②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신설></p> <p>제45조 (생략)</p>	<p>1. ~ 3. (현행과 같음)</p> <p>⑦ (현행과 같음)</p> <p>제33조(평가위원회 개최 및 경비지원)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범위에서 ----- -----.</p> <p>제45조(편의시설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박물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박물관 내·외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1. 매점(자동판매기를 포함한다.)</p> <p>2. 기념품점</p> <p>3. 부설주차장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p> <p>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p> <p>③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박물관 관람료와 별도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부설주차장 이용료 및 운영은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p> <p>제46조 (현행 제45조와 같음)</p>

제 명 :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사유

현재 운영 중인 관광시설물 중 유료 관광시설물의 어린이 입장료에 대하여 어린이의 참여기회 확대 및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어린이 입장료를 무료로 전환하고 신규 및 누락된 관광시설물에 대하여「관광시설」의 명칭에 반영시켜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관광시설물 추가(안 제3조, 별표 1)

○ 어울미센터, 섬이야기박물관 추가

나. 어린이 이용료 감면(안 제6조, 별표 2)

○ 36개월미만의 영유아 ⇒ 만12세 이하의 어린이로 변경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홍 인 성

2019년 7월 29일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1341호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제3호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어린이,”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만12세 이하의 어린이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2호 중 ‘감문홍보관 및 합숙소 관리·운영’을 ‘어울미센터 관리·운영’으로 한다.

[별표 1]

관광시설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관광시설명	위 치	비 고
동화마을 트리아트스토리	인천광역시 중구 동화마을길 42	-
해양광장 입체영상관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 36	-
월드커뮤니티 센터	인천광역시 중구 체물량로232번길 26	-
어을미센터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 377-1	
섬이야기박물관	인천광역시 중구 떼무리길 15	

[별표 2]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시설 이용료(제6조제1항 관련)

구 분		이 용 료(1명 기준)			비 고
		성 인 (만19세이상)	청소년 (만13세~18세)	군 인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포함)	
동화마을 트릭아트 스토리	개인	6,000원	4,000원	4,000원	
	단체	4,000원	3,000원	3,000원	
해양광장 입 체 영 상 관	개인	3,000원	2,000원	2,000원	
	단체	2,500원	1,500원	1,500원	

※ 이용자는 이용료의 구분에 필요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2. (생 략)</p> <p>3. “<u>어린이</u>”란 4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p> <p>4. “<u>청소년</u>”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p> <p>5. “<u>군인</u>”이란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 (의무경찰, 사회복지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p> <p>6. “<u>성인</u>”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p> <p>7. (생 략)</p>	<p>제2조(정의) ----- -----.</p> <p>1.·2.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3. (현행 제7호와 같음)</p>
<p>제6조(이용료 및 이용권 발급) ① ~ ③ (생 략)</p> <p>④ <u>이용권은 어린이, 청소년, 군인 및 성인의 개인이용권과 단체이용권으로 각각 구분하여 발급한다.</u></p> <p>⑤ (생 략)</p>	<p>제6조(이용료 및 이용권 발급)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이용권은</u> ----- ----- -----.</p> <p>⑤ (현행과 같음)</p>
<p>제7조(이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한다.</p> <p>1. ~ 9. (생 략)</p> <p>10. <u>보호자를 동반한 36개월 미만의 영유아</u></p> <p>11. (생 략)</p> <p>② (생 략)</p>	<p>제7조(이용료의 감면) ① ----- ----- -----.</p> <p>1. ~ 9. (현행과 같음)</p> <p>10. <u>만12세 이하의 어린이</u></p> <p>11.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제 명 :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사유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장난감 대여점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어린이집의 명칭 변경,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아동친화적인 보육정책 추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영유아 장난감 대여점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 제18조, 제19조)
- 나.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어린이집 명칭을 “구립○○○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으로 변경(안 제11조)
- 다. 위원회 심의에 따른 위탁기간 조정(안 제13조)
- 라. 법 제36조 및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와 질적 향상 위한 어린이집의 비용보조 사항 신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홍 인 성

2019년 7월 29일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1342호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유아 장난감 대여점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제11조 중 “구립 ○○○어린이집”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위원회 심의로 결정된 경우

제3장에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비용의 보조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1.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 2.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4장(제18조 및 제19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영유아 장난감 대여점의 설치 및 운영

제18조(설치 및 명칭)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놀이를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영유아 장난감 대여점(이하 “대여점”이라 한다)을 접근성과 공공성이 확보되는 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

② 대여점의 명칭은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중구○○점”으로 한다.

제19조(운영) ① 구청장은 대여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하여 법인,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또는 기관,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이상 5년 미만의 범위에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대여점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인천광역시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운영 지침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여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대여점의 위탁체결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기능)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중구 (이하 “구”라 한다)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2. (생 략)</p> <p>3. <u>법 제52조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u></p> <p>4. (생 략)</p> <p>제11조(명칭)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구립 어린이집의 명칭은 <u>구립 ○○○어린이집</u>으로 한다.</p> <p>제13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3년 이상 5년 미만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p> <p>1. 2. (생 략)</p> <p><신 설></p> <p>②·③ (생 략)</p> <p><신 설></p>	<p>제5조(기능)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유아 장난감 대여점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u></p> <p>4. (현행과 같음)</p> <p>제11조(명칭) ----- ----- <u>○○어린이집</u> -----.</p> <p>제13조(위탁기간) ① -----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위원회 심의로 결정된 경우</u></p> <p>②·③ (현행과 같음)</p> <p><u>제17조(비용의 보조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u></p> <p>1. <u>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u></p> <p>2. <u>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u></p>

규 칙

제 명 :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

개정사유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9430호, 2018.12.24. 개정시행)」, 「공무원 공직자 행동 강령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 156호, 2019.1.8. 개정시행)」 개정 내용에 따라 행위기준과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갑질 관련 행위기준(안 제19조의2 신설)

○ 갑질의 개념, 갑질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금지함

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된 부당지원 요구 등 금지 및 감독기관의 부당한 지원 요구에 대한 처리 서식 마련(안 제22조의2 및 별지 제13호의2 서식 신설)

다. 행동강령책임관의 상담 업무 규정 추가(안 제26조제1항)

○ 행동강령 규칙 위반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공무원이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하는 행위유형에 신설된 규정을 반영

라. 행동강령 규칙 교육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32조제3항 신설)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홍 인 성

2019년 7월 29일

인천광역시 중구 규칙 제943호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직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6조제1항 중 “금품등의 수수”를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한 행위, 금품등의 수수,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로 한다.

제3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이 지켜야 할 사항
- 4. 이 규칙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무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별지 제1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3호의2서식]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요구자	성명	직위(직급)
	소속	

요구받은 사항

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19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직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현행	개정안
<p><신설></p>	<p>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p> <p>제22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p> <p>① 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p>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제26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 공무원은 알선·청탁, <u>금품등의 수수</u>,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규칙을 위반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32조(교육) ①·② (생략)</p> <p><신설></p>	<p>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p> <p>제26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 ---- ----- <u>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한 행위, 금품등의 수수,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u>-----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2조(교육)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무와 관련하여 <u>향응·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u>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u>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u> 3. <u>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u>을 위하여 공무원이 지켜야 할 사항을 4. 이 규칙 위반행위에 대한 <u>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u> 5. 그 밖에 <u>부패의 방지와 공무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u> 필요한 사항

고 시

인천광역시 중구 고시 제2019-121호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월미1지구) 지형도면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2조제2항에 토지이용 규제 내용(용도지역·지구 등)을 새로이 조사·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 7. 29.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 업 명 : 「월미1지구」지적재조사사업
-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 97-2번지일원

2.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3. 토지이용규제내용(지역·지구 등) 변경사항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합 계		1,036,858.3	1,036,058.3	감) 800.0
주거	준주거지역	492.9	504.9	증) 12.0
상업	일반상업지역	201,017.5	201,009.2	감) 8.3
공업	일반공업지역	152,266.7	152,979.1	증) 712.4
	준공업지역	66,693.5	66,040.6	감) 652.9
녹지	보전녹지지역	614,572.4	613,741.4	감) 831.0
미지정		1,815.3	1,783.1	감) 32.2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중구 북성동1가 98-53번지 일원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	504.9	1,000%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중구 북성동1가 98-53번지 일원	일반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201,009.2	500%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중구 북성동1가 98-53번지 일원	일반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152,979.1	350%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중구 북성동1가 98-53번지 일원	준공업지역	준공업지역	66,040.6	400%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중구 북성동1가 98-53번지 일원	보전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613,741.4	50%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중구 북성동1가 98-53번지 일원	미지정	미지정	1,783.1	-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 고도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고도제한내용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월미지구	고도지구	북성동1가 98-50번지 일원	GL+50m 이하	182,438.7	1984. 8.14. (인고 제770호)	-
변 경	월미지구	고도지구	북성동1가 98-50번지 일원	GL+50m 이하	187,418.4		
기 정	월미공원 남측	고도지구	중구 북성동1가 80-11번지 일원	처마고 8m 이하 건축물높이 10m이하	283,475.0	1989. 9.20. (인고 제1570호)	-
변 경	월미공원 남측	고도지구	중구 북성동1가 80-11번지 일원	처마고 8m 이하 건축물높이 10m이하	293,517.4		

- 고도지구 변경사유서

지 구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월미지구	○ 면적증가(증 4,979.7㎡) - 182,438.7㎡ → 187,418.4㎡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월미공원남측	○ 면적증가(증 10,042.4㎡) - 283,475.0㎡ → 293,517.4㎡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 보호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m ²)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보호지구	항만중요시설물 보호지구	항동7가 27-10번지 일원	3,200,760.0	1965. 7.14. (건고 제1692호)	-
변 경	보호지구	항만중요시설물 보호지구	항동7가 27-10번지 일원	3,201,054.0		-

- 보호지구 변경사유서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보호지구	○면적증가(증 294m ²) - 3,200,760.0m ² → 3,201,054.0m ²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4. 지형도면 : 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계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인천광역시 중구 고시 제2019-122호

도시관리계획(월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월미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중구청(도시개발과 ☎760-7518)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19. 7. 29.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1.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계획

2.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 98-53번지 일원

3.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월미지구단위 계획구역	중구 북성동1가 98-53번지 일원	347,243.3	증) 864.9	348,108.2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월미지구단위 계획구역	○ 면적증가(증 864.9㎡) - 347,243.3㎡ → 348,108.2㎡	○ 지적제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 별첨(구보게재 생략)

나.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47,243.3	증) 864.9	348,108.2	100.0	
주거	준주거	486.0	증) 18.9	504.9	0.1	
상업	일반상업	203,809.4	감) 2,800.2	201,009.2	57.7	
공업	일반공업	1,251.6	감) 30.0	1,221.6	0.4	
	준공업	47,361.3	감) 83.9	47,277.4	13.6	
녹지	보전녹지	63,383.6	증) 3760.1	67,143.7	19.3	
미지정		30,951.4	-	30,951.4	8.9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중구 북성동1가 98-53번지 일원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	504.9	500%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	중구 북성동1가 98-53번지 일원	일반상업 지역	일반상업 지역	201,009.2	1,000%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	중구 북성동1가 98-53번지 일원	일반공업 지역	일반공업 지역	1,221.6	350%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	중구 북성동1가 98-53번지 일원	준공업지역	준공업지역	47,277.4	400%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	중구 북성동1가 98-53번지 일원	보전녹지 지역	보전녹지 지역	67,143.7	50%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	중구 북성동1가 98-53번지 일원	미지정	미지정	30,951.4	-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 고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고도제한내용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	고도지구	고도지구	북성동1가 98-50번지 일원	GL+50m 이하	182,438.7	1984. 8.14. (인고 제770호)	-
변경	-	고도지구	고도지구	북성동1가 98-50번지 일원	GL+50m 이하	187,418.4		

- 고도지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고도지구	○면적증가(증 4,979.7㎡) - 182,438.7㎡ → 187,418.4㎡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 보호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	시설보호 지구	항만시설 보호지구	중구 항동7가 27-10번지 일원	3,200,760.0㎡ (지구단위구역 내 2,299㎡ 포함)	1965. 7.14.	-
변경	-	보호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중구 항동7가 27-10번지 일원	3,201,054.0㎡ (지구단위구역 내 2,593㎡ 포함)		

- 보호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보호지구	○면적변경(증 294㎡) - 3,200,760.0㎡ → 3,201,054.0㎡ ○지구명칭 변경 - 시설보호지구(항만시설보호지구) → 보호지구(중요시설물보호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및 법률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
관리계획 결정도 : 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게재 생략)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도로총괄표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기정	44	7,865.2	92,479.8	10	4,366.2	66,743.6	6	638.3	6,719.8	28	2,860.7	19,016.4
	변경	44	7,865.2	92,479.8	10	4,366.2	66,743.6	6	638.3	6,719.8	28	2,860.7	19,016.4
중도	기정	8	4,032.4	65,126.8	6	3,640.4	59,720.8	1	162.0	2,640.3	1	230.0	2,765.7
	변경	8	4,032.4	65,126.8	6	3,640.4	59,720.8	1	162.0	2,640.3	1	230.0	2,765.7
소도	기정	36	3,832.8	27,353.0	4	725.8	7,022.8	5	476.3	4,079.5	27	2,630.7	16,250.7
	변경	36	3,832.8	27,353.0	4	725.8	7,022.8	5	476.3	4,079.5	27	2,630.7	16,250.7

※ 연장 및 면적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항임

○ 도로(변경)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2	20	국지	1,485 (398.6)	대2-17	중1-138	일반	98-65	69.11.3	인천광역시고시 제2000-33호
변경	중로	1	12	20	국지	1,485 (398.6)	대2-17	중1-138	일반	98-65		
기정	중로	1	48	20	국지	2,555 (906.3)	대2-17	대2-17	일반	산2-12	69.11.3	인천광역시고시 제1991-97호
변경	중로	1	48	20	국지	2,555 (906.3)	대2-17	대2-17	일반	산2-12		
기정	중로	1	132	20	국지	300	중1-48	중1-138	일반	98-53	00.3.8	인천광역시고시 제2000-33호
변경	중로	1	132	20	국지	300	중1-48	중1-138	일반	98-53		
기정	중로	1	133	20	국지	245	중1-132	중1-12	일반	98-49	00.3.8	인천광역시고시 제2000-33호
변경	중로	1	133	20	국지	245	중1-132	중1-12	일반	98-49		
기정	중로	1	138	20	국지	1,485	중1-12	중1-48	특수	98-13	75.5.16	인천광역시고시 제2000-33호
변경	중로	1	138	20	국지	1,485	중1-12	중1-48	특수	98-13		
기정	중로	1	293	20	국지	305.5	중1-48	중1-12	일반	98-33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변경	중로	1	293	20	국지	305.5	중1-48	중1-12	일반	98-33		
기정	중로	2	132	15	국지	162	중1-48	중1-138	일반	98-57	69.11.3	인천광역시고시 제2000-33호
변경	중로	2	132	15	국지	162	중1-48	중1-138	일반	98-57		
기정	중로	3	131	12	국지	230	중1-48	중1-132	일반	98-290	00.3.8	인천광역시고시 제2000-33호
변경	중로	3	131	12	국지	230	중1-48	중1-132	일반	98-290		
기정	소로	1	1	10	국지	272	중1-12	북성동1가 97-25	일반	97-10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변경	소로	1	1	10	국지	272	중1-12	북성동1가 97-25	일반	97-10		
기정	소로	1	2	10	국지	199.8	중1-132	중1-12	일반	98-222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변경	소로	1	2	10	국지	199.8	중1-132	중1-12	일반	98-222		
기정	소로	1	3	10	국지	186.5	중1-132	중2-132	일반	98-326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변경	소로	1	3	10	국지	186.5	중1-132	중2-132	일반	98-326		
기정	소로	1	4	10	국지	67.5	중1-138	중1-48	일반	98-60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변경	소로	1	4	10	국지	67.5	중1-138	중1-48	일반	98-60		
기정	소로	2	1	8	국지	60.2	중1-12	소1-2	일반	98-250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변경	소로	2	1	10	국지	60.2	중1-12	소1-2	일반	98-250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2	8	국지	65.7	중1-133	소1-2	일반	98-218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변경	소로	2	2	10	국지	65.7	중1-133	소1-2	일반	98-218		
기정	소로	2	3	8	국지	65.1	중1-138	소1-2	일반	98-259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변경	소로	2	3	8	국지	65.1	중1-138	소1-2	일반	98-259		
기정	소로	2	4	8	국지	65.3	중1-133	소1-2	일반	98-227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변경	소로	2	4	8	국지	65.3	중1-133	소1-2	일반	98-227		
기정	소로	2	5	8	국지	220.0	중1-133	중1-293	일반	98-35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변경	소로	2	5	8	국지	220.0	중1-133	중1-293	일반	98-35		
기정	소로	3	1	6	국지	32.3	중1-12	소3-4	일반	98-22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변경	소로	3	1	6	국지	32.3	중1-12	소3-4	일반	98-22		
기정	소로	3	2	6	국지	29.6	중1-12	소3-4	일반	98-79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변경	소로	3	2	6	국지	29.6	중1-12	소3-4	일반	98-79		
기정	소로	3	3	6	국지	30.1	중1-133	소3-4	일반	98-25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변경	소로	3	3	6	국지	30.1	중1-133	소3-4	일반	98-25		
기정	소로	3	4	6	국지	217.0	중1-293	소2-5	일반	98-35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변경	소로	3	4	6	국지	217.0	중1-293	소2-5	일반	98-35		
기정	소로	3	5	6	국지	96.1	소2-5	소3-4	일반	98-115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변경	소로	3	5	6	국지	96.1	소2-5	소3-4	일반	98-115		
기정	소로	3	6	6	국지	110.9	소2-5	소3-4	일반	98-92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변경	소로	3	6	6	국지	110.9	소2-5	소3-4	일반	98-92		
기정	소로	3	7	6	국지	126.5	소2-5	소3-4	일반	98-84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변경	소로	3	7	6	국지	126.5	소2-5	소3-4	일반	98-84		
기정	소로	3	8	6	국지	21.3	소3-9	소3-7	일반	98-128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변경	소로	3	8	6	국지	21.3	소3-9	소3-7	일반	98-128		
기정	소로	3	9	6	국지	115.2	중1-293	소2-5	일반	98-19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변경	소로	3	9	6	국지	115.2	중1-293	소2-5	일반	98-19		
기정	소로	3	10	6	국지	30.0	중1-133	소3-11	일반	98-51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변경	소로	3	10	6	국지	30.0	중1-133	소3-11	일반	98-51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1	6	국지	215.9	소2-5	소3-15	일반	98-180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변경	소로	3	11	6	국지	215.9	소2-5	소3-15	일반	98-180			
기정	소로	3	12	6	국지	192.0	소2-5	소3-15	일반	98-170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변경	소로	3	12	6	국지	192.0	소2-5	소3-15	일반	98-170			
기정	소로	3	13	6	국지	154.3	소2-5	소3-15	일반	98-387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변경	소로	3	13	6	국지	154.3	소2-5	소3-15	일반	98-387			
기정	소로	3	14	6	국지	112.7	소2-5	소3-15	일반	98-155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변경	소로	3	14	6	국지	112.7	소2-5	소3-15	일반	98-155			
기정	소로	3	15	6	국지	255.7	중1-132	소2-5	일반	98-21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변경	소로	3	15	6	국지	255.7	중1-132	소2-5	일반	98-21			
기정	소로	3	16	6	국지	20.1	소3-12	소3-11	일반	98-47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변경	소로	3	16	6	국지	20.1	소3-12	소3-11	일반	98-47			
기정	소로	3	17	6	국지	29.7	중1-132	소3-11	일반	98-48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변경	소로	3	17	6	국지	29.7	중1-132	소3-11	일반	98-48			
기정	소로	3	18	6	국지	26.8	중1-48	소3-15	일반	98-39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변경	소로	3	18	6	국지	26.8	중1-48	소3-15	일반	98-39			
기정	소로	3	19	6	국지	66.6	중1-138	소1-3	일반	98-338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변경	소로	3	19	6	국지	66.6	중1-138	소1-3	일반	98-338			
기정	소로	3	20	6	국지	67.0	중1-138	소1-3	일반	98-443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변경	소로	3	20	6	국지	67.0	중1-138	소1-3	일반	98-443			
기정	소로	3	21	6	국지	65.1	중3-131	소1-3	일반	98-329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변경	소로	3	21	6	국지	65.1	중3-131	소1-3	일반	98-329			
기정	소로	3	22	6	국지	64.2	중3-131	소1-3	일반	98-364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변경	소로	3	22	6	국지	64.2	중3-131	소1-3	일반	98-364			
기정	소로	3	23	6	국지	123.9	중1-48	중3-131	일반	98-299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변경	소로	3	23	6	국지	123.9	중1-48	중3-131	일반	98-299			
기정	소로	3	24	6	국지	99.6	중1-48	중3-131	일반	98-310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변경	소로	3	24	6	국지	99.6	중1-48	중3-131	일반	98-310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25	6	국지	68.6	중1-48	중3-131	일반	98-321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변경	소로	3	25	6	국지	68.6	중1-48	중3-131	일반	98-321		
기정	소로	3	26	6	국지	36.6	중1-48	중3-131	일반	98-355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변경	소로	3	26	6	국지	36.6	중1-48	중3-131	일반	98-355		
기정	소로	3	27	4.4~5.6	특수	222.9	북성동1가 97-21	북성동1가 97-21	보행자 전용	97-21	17.2.27	인천광역시고시 제2017-37호
변경	소로	3	27	4.4~5.6	특수	222.9	북성동1가 97-21	북성동1가 97-21	보행자 전용	97-21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1-12	중로1-12	○선형변경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중로1-48	중로1-48	○선형변경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중로1-132	중로1-132	○선형변경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중로1-133	중로1-133	○선형변경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중로1-138	중로1-138	○선형변경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중로1-293	중로1-293	○선형변경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중로2-132	중로2-132	○선형변경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중로3-131	중로3-131	○선형변경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소로1-1	소로1-1	○선형변경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소로1-2	소로1-2	○선형변경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소로1-3	소로1-3	○선형변경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소로1-4	소로1-4	○선형변경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소로2-1	소로2-1	○선형변경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소로2-2	소로2-2	○선형변경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소로2-3	소로2-3	○선형변경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소로2-4	소로2-4	○선형변경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소로2-5	소로2-5	○선형변경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3-1	소로3-1	○선형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소로3-2	소로3-2	○선형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소로3-3	소로3-3	○선형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소로3-4	소로3-4	○선형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소로3-5	소로3-5	○선형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소로3-6	소로3-6	○선형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소로3-7	소로3-7	○선형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소로3-8	소로3-8	○선형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소로3-9	소로3-9	○선형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소로3-10	소로3-10	○선형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소로3-11	소로3-11	○선형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소로3-12	소로3-12	○선형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소로3-13	소로3-13	○선형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소로3-14	소로3-14	○선형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소로3-15	소로3-15	○선형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소로3-16	소로3-16	○선형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소로3-17	소로3-17	○선형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소로3-18	소로3-18	○선형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소로3-19	소로3-19	○선형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소로3-20	소로3-20	○선형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소로3-21	소로3-21	○선형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소로3-22	소로3-22	○선형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소로3-23	소로3-23	○선형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소로3-24	소로3-24	○선형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소로3-25	소로3-25	○선형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소로3-26	소로3-26	○선형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소로3-27	소로3-27	○선형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 주차장(변경)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6,915.5	감) 45.3	6,870.2	-	
변경	1	노외주차장	북성동1가 98-39일원	3,393.3	증) 32.2	3,425.5	97.11.12	
변경	2	노외주차장	북성동1가 98-567일원	826.9	감) 31.5	795.4	07.01.15	○ 지상4층 입체화, 58면 이상
변경	3	노외주차장	북성동1가 97-16일원	2,370.0	감) 27.7	2,342.3	07.01.15	
변경	4	노외주차장	북성동1가 98-115일원	325.3	감) 18.3	307.0	-	

-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노외주차장	○ 면적감소(증 32.2㎡) - 3,393.3㎡ → 3,425.5㎡	○ 지적제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2	노외주차장	○ 면적감소(감 31.5㎡) - 826.9㎡ → 795.4㎡	○ 지적제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3	노외주차장	○ 면적감소(감 27.7㎡) - 2,370.0㎡ → 2,342.3㎡	○ 지적제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4	노외주차장	○ 면적감소(감 18.3㎡) - 325.3㎡ → 307.0㎡	○ 지적제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 퀘도(변경)

- 퀘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삭도	하부 승하차장 (북성동1가 98-606번지)	상부 승하차장 (북성동1가 산2-3번지)	도로(중로1-48호선) 공원(월미도시자연공원)	581.6	5,816	09. 11.16	중복결정, 폭원:10m
변경	퀘도	하부 승하차장 (북성동1가 98-606번지)	상부 승하차장 (북성동1가 산2-3번지)	도로(중로1-48호선) 공원(월미도시자연공원)	581.6	5,816		

- 궤도(노선)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궤도	○선형변경 ○명칭변경: 삭도→궤도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 궤도(승하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삭도	계	-	3,414.0	-	-
		하부 승하차장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 98-606번지	794.0	09.11.16	-
		상부 승하차장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 산2-3번지	2,620.0	09.11.16	중복결정
변경	궤도	계	-	3,406.2	-	-
		하부 승하차장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 98-606번지	786.2	09.11.16	-
		상부 승하차장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 산2-3번지	2,620.0	09.11.16	중복결정

- 궤도(승하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궤도	○하부승하차장 면적 변경(감 7.8㎡) - 794.0㎡ → 786.2㎡ ○명칭변경: 삭도→궤도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 지상 상부 통과로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과 중복 결정

- 도로 1개소 : 중로 1-48호선(면적:217㎡)
- 공원 1개소 : 월미도시자연공원(면적:8,219㎡)

○ 녹지(변경)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녹지	완충 녹지	북성동1가 97-9	4,298.6	감) 88.3	4,210.3	07.01.15	폭원 = 20m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완충녹지	○면적 변경(감 88.3㎡) - 4,298.6㎡ → 4,210.3㎡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 공원(변경)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9	월미 공원	근린 공원	북성동1가 월미산 일원	590,614 (59,692.3)	감)2,511.1 (감)64)	588,102.9 (59,628.3)	2013. 6.24.	(중로1-48호, 중로1-293호, 소로2-5호, 소로3-9호 중복결정)

※ 기정은 인천 고시2013-98호에 의거함,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면적임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9	월미공원	○면적 변경(감 2,511.1㎡) - 590,614㎡ → 588,102.9㎡ ※ 지구단위구역 내(감 64㎡) - 59,692.3㎡ → 59,628.3㎡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 공공공지(변경)

-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공공공지	북성동1가 106-9일원	6,434.8	-	6,434.8	17.2.27	

- 공공공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공공공지	○선형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계재 생략)

나. 가구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조서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기 정	변 경		
2-1-7	1	북성동 98-367	1,219.5	1,219.5	획지	
2-2-1	2	북성동 98-216	1,054.5	1,045.9	획지	
	3	북성동 98-217	1,182.5	1,182.5	획지	
2-2-2	4	북성동 98-218	1,940.5	1,940.5	획지	
	5	북성동 98-225	993.0	993.0	획지	
	6	북성동 98-226	996.4	996.4	획지	
2-2-3	7	북성동 98-227	1,082.3	1,083.7	획지	
	8	북성동 98-228	1,138.5	1,138.5	획지	
	9	북성동 98-230	1,151.7	1,147.6	획지	
	10	북성동 98-559	1,184.8	1,184.8	획지	
2-4-1	11	북성동 98-577	1,653.0	1,653.0	획지	
	12	북성동 98-12	3,271.1	3,271.1	획지	
	13	북성동 98-580	4,396.7	4,396.7	획지	

- 공동개발 권장계획

기정						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 면적(㎡)	필지		비고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 면적(㎡)	필지		비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1-1-1	1-1-1	29,697.2	98-3	482.4	특별계획 구역 (선광선창 부지)	1-1-1	1-1-1	29,659.4	98-3	471.9	특별계획 구역 (선광선창 부지)
			97-25	166.3					97-25	108.3	
			97-14	2,406.3					97-14	2,433.1	
			97-15	4,334.5					97-15	4,374.0	
			97-11	6,258.2					97-11	6,245.6	
			97-9	7,475.7					97-9	7,461.0	
			97-16	8,573.8					97-16	8,565.5	
2-1-1	2-1-1	720.7	98-8	720.7	-	2-1-1	2-1-1	749.5	98-8	749.5	-
2-1-2	2-1-2	2,131.6	98-503	220.4	공동개발 권장	2-1-2	2-1-2	2,072.4	98-503	212.9	공동개발 권장
			98-500	220.4					98-500	213.0	
			98-502	220.4					98-502	213.0	

기정					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 면적(㎡)	필지		비고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 면적(㎡)	필지		비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98-501	220.4				98-501	213.0		
			98-52	416.7				98-52	406.7		
			98-498	416.7				98-498	406.9		
			98-499	416.6				98-499	406.9		
2-1-3	2-1-3	3,863.4	98-250	165.3	공동개발 권장	2-1-3	2-1-3	3,888.9	98-250	180.4	공동개발 권장
			98-251	331.2					98-251	327.4	
			98-263	165.6					98-263	167.9	
			98-270	330.9					98-270	330.9	
			98-271	331.2					98-271	331.2	
			98-252	330.9	공동개발 권장				98-252	330.9	공동개발 권장
			98-253	330.9					98-253	329.6	
			98-254	330.9					98-254	325.9	
			98-255	330.9	공동개발 권장				98-255	337.5	공동개발 권장
			98-220	99.2					98-220	99.2	
			98-426	132.2					98-426	143.8	
			98-427	155.4					98-427	155.4	
			98-428	231.7					98-428	231.7	
98-532	597.1	98-532	597.1								
2-1-4	2-1-4	3,904.4	98-259	331.2	공동개발 권장	2-1-4	2-1-4	3,964.2	98-259	346.9	공동개발 권장
			98-260	281.6					98-260	291.4	
			98-261	331.2					98-261	342.3	
			98-262	330.9					98-262	325.7	
			98-573	49.6	공동개발 권장				98-573	45.9	공동개발 권장
			98-10	495.9					98-10	480.4	
			98-264	661.5	공동개발 권장				98-264	661.5	공동개발 권장
			98-256	597.3					98-256	593.3	
			98-446	595.0					98-446	613.0	
98-519	230.2	98-519	263.8								
2-1-5	2-1-5	3,590.4	98-336	751.2	공동개발 권장	2-1-5	2-1-5	3,639.0	98-336	774.1	공동개발 권장
			98-337	330.6					98-337	332.8	
			98-565	573.4	공동개발 권장				98-565	598.4	공동개발 권장
			98-338	671.8					98-338	678.3	
			98-434	331.3					98-434	331.3	
			98-464	471.0	공동개발 권장				98-464	469.1	공동개발 권장
			98-496	461.1					98-496	455.0	
2-1-6	2-1-6	3,415.4	98-339	342.9	공동개발 권장	2-1-6	2-1-6	3,474.0	98-339	348.5	공동개발 권장
			98-340	330.7					98-340	336.1	

기정						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 면적(㎡)	필지		비고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 면적(㎡)	필지		비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98-468	330.9	공동개발 권장				98-468	348.8	공동개발 권장
			98-341	345.9					98-341	342.0	
			98-444	315.6					98-444	315.6	
			98-495	330.6					98-495	330.6	
			98-433	474.7	공동개발 권장				98-433	481.5	공동개발 권장
			98-435	481.7					98-435	500.7	
			98-469	462.4					98-469	470.2	
2-1-7	2-1-7	2,336.9	98-443	136.7	공동개발 권장	2-1-7	2-1-7	2,369.2	98-443	145.4	공동개발 권장
			98-368	211.0					98-368	227.5	
			98-442	309.1					98-442	316.2	
			98-463	460.6					98-463	460.6	
			98-367	1,219.5	확지				98-367	1,219.5	확지
2-2-1	2-2-1	4,639.3	98-26	827.0	공동개발 권장	2-2-1	2-2-1	4,630.7	98-26	811.3	공동개발 권장
			98-560	533.0					98-560	548.7	
			98-213	647.7	공동개발 권장				98-213	647.7	공동개발 권장
			98-578	394.6					98-578	394.6	
			98-216	1,054.5	확지				98-216	1,045.9	확지
			98-217	1,182.5	확지				98-217	1,182.5	확지
2-2-2	2-2-2	3,929.9	98-225	993.0	확지	2-2-2	2-2-2	3,929.9	98-225	993.0	확지
			98-226	996.4	확지				98-226	996.4	확지
			98-218	1,940.5	확지				98-218	1,940.5	확지
2-2-3	2-2-3	4,557.3	98-227	1,082.3	확지	2-2-3	2-2-3	4,554.6	98-227	1,083.7	확지
			98-228	1,138.5	확지				98-228	1,138.5	확지
			98-230	1,151.7	확지				98-230	1,147.6	확지
			98-559	1,184.8	확지				98-559	1,184.8	확지
2-2-4	2-2-4	4,192.3	98-332	667.4	공동개발 권장	2-2-4	2-2-4	4,183.6	98-332	637.6	공동개발 권장
			98-335	700.2					98-335	697.8	
			98-333	333.7	공동개발 권장				98-333	341.9	공동개발 권장
			98-334	829.1					98-334	867.7	
			98-524	333.7					98-524	307.2	
			98-330	664.1	공동개발 권장				98-330	667.3	공동개발 권장
			98-331	664.1					98-331	664.1	
2-2-5	2-2-5	3,396.6	98-328	565.0	공동개발 권장	2-2-5	2-2-5	3,361.9	98-328	574.3	공동개발 권장
			98-329	565.0					98-329	563.2	
			98-325	565.0	공동개발 권장				98-325	562.0	공동개발 권장
			98-326	568.3					98-326	556.7	
			98-324	565.0	공동개발 권장				98-324	555.0	공동개발 권장

기정					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 면적(㎡)	필지		비고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 면적(㎡)	필지		비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98-327	142.0				98-327	137.5			
			98-506	142.1				98-506	137.8			
			98-507	142.1				98-507	137.8			
			98-508	142.1				98-508	137.6			
2-2-6	2-2-6	5,513.9	98-364	347.0	공동개발 권장	2-2-6	2-2-6	5,466.9	98-364	352.2	공동개발 권장	
			98-365	647.9					98-365	647.9		
			98-552	297.6					98-552	297.6		
			98-366	568.6	공동개발 권장				98-366	568.6	공동개발 권장	
			98-537	568.6					98-537	583.8		
			98-361	647.9	공동개발 권장				98-361	637.7	공동개발 권장	
			98-362	647.9					98-362	625.5		
			98-363	644.6					98-363	647.7		
			98-535	669.2	공동개발 권장				98-535	647.0	공동개발 권장	
			98-536	474.6					98-536	458.9		
2-3-1 (계속)	2-3-1 (계속)	12,880.9 (계속)	98-419	429.1	공동개발 권장	2-3-1 (계속)	2-3-1 (계속)	12,955.1 (계속)	98-419	429.1	공동개발 권장	
			98-58	429.1					98-58	429.1		
			98-437	166.7					98-437	162.2		
			98-439	258.0	공동개발 권장				98-439	242.9	공동개발 권장	
			98-440	215.1					98-440	215.1		
			98-420	544.3					98-420	551.8		
			98-432	391.9	공동개발 권장				98-432	404.5	공동개발 권장	
			98-438	118.0					98-438	107.0		
			98-568	23.7					98-568	20.8		
			98-243	375.9	공동개발 권장				98-243	374.1	공동개발 권장	
			98-273	375.9					98-273	373.8		
			98-274	375.9					98-274	385.0		
			98-275	346.2	공동개발 권장				98-275	327.9	공동개발 권장	
			98-276	672.3					98-276	688.1		
			98-277	226.5					98-277	235.1		
			98-509	165.6	공동개발 권장				98-509	161.4	공동개발 권장	
			98-244	330.5					98-244	332.8		
			98-278	250.6					98-278	253.0		
			98-279	220.4					98-279	211.5		
			98-280	429.7					98-280	429.7		
98-281	124.6	98-281	132.0									
98-282	179.2	98-282	176.3									
98-283	208.9	98-283	213.7									
98-285	207.6		98-285	203.1								

기정					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 면적(㎡)	필지		비고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 면적(㎡)	필지		비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2-3-1	2-3-1	12,880.9	98-241	164.9	공동개발 권장	2-3-1	2-3-1	12,955.1	98-241	164.9	공동개발 권장
			98-424	161.7					98-424	153.8	
			98-448	149.9					98-448	149.9	
			98-449	188.9					98-449	197.2	
			98-540	114.3					98-540	114.3	
			98-541	102.2					98-541	112.3	
			98-542	101.0					98-542	98.3	
			98-543	108.3					98-543	108.3	
			98-544	108.3					98-544	108.3	
			98-545	111.3					98-545	111.3	
			98-546	126.5					98-546	131.0	
			98-242	585.2					98-242	579.1	
			98-533	888.6					98-533	869.6	
			98-452	150.0					98-452	154.3	
			98-453	147.0	98-453				161.9		
			98-450	149.9	98-450				146.6		
			98-451	149.9	98-451				147.2		
			98-454	287.9	98-454				302.9		
			98-455	155.9	98-455				157.7		
			98-456	144.0	98-456				144.0		
			98-457	144.0	98-457				144.9		
			98-458	144.0	98-458				144.0		
			98-459	141.0	98-459				141.0		
			98-460	135.0	98-460				135.8		
			98-461	135.0	98-461				149.5		
			98-462	141.0	98-462				154.5		
			98-268	331.2	98-268				324.6		
			98-269	217.1	98-269				226.5		
			98-59	331.2	98-59				361.4		
			2-4-1	2-4-1	10,950.0				98-61	512.4	공동개발 권장
98-62	201.3	98-62				202.4					
98-63	330.6	98-63				333.6					
98-64	270.5	98-64				269.1					
98-286	314.4	98-286				311.8					
98-12	3,271.1	98-12				3,271.1	획지				
98-577	1,653.0	98-577				1,653.0	획지				
98-580	4,396.7	98-580				4,396.7	획지				

기정					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 면적(㎡)	필지		비고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 면적(㎡)	필지		비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3-1-1	3-1-1	1,679.4	98-23	250.1	공동개발 권장	3-1-1	3-1-1	1,678.4	98-23	248.4	공동개발 권장
			98-80	731.9					98-80	731.9	
			98-81	447.3					98-81	449.7	
			98-569	250.1					98-569	248.4	
3-1-2	3-1-2	2,281.3	98-78	581.2	공동개발 권장	3-1-2	3-1-2	2,285.2	98-79	581.2	공동개발 권장
			98-79	534.5					98-78	557.5	
			98-77	570.2					98-77	551.1	
			98-22	595.4					98-22	595.4	
3-1-3	3-1-3	2,014.9	98-234	496.9	공동개발 권장	3-1-3	3-1-3	2,031.3	98-234	487.6	공동개발 권장
			98-233	510.4					98-233	500.4	
			98-232	511.4	공동개발 권장				98-232	536.4	공동개발 권장
			98-25	496.2					98-25	506.9	
3-1-4	3-1-4	1,437.1	98-24	448.6	공동개발 권장	3-1-4	3-1-4	1,438.7	98-24	432.8	공동개발 권장
			98-114	163.6					98-114	165.2	
			98-489	163.7					98-489	167.7	
			98-116	161.9	공동개발 권장				98-116	163.7	공동개발 권장
			98-117	340.5					98-117	346.6	
			98-493	158.8					98-493	162.7	
3-1-5	3-1-5	3,345.2	98-30	236.7	공동개발 권장	3-1-5	3-1-5	3,370.1	98-30	233.5	공동개발 권장
			98-101	230.1					98-101	233.7	
			98-102	228.1					98-102	238.2	
			98-103	120.0					98-103	126.0	
			98-104	115.7					98-104	112.3	
			98-105	234.7					98-105	234.7	
			98-466	120.0					98-466	120.0	
			98-467	115.7					98-467	119.0	
			98-106	157.0	공동개발 권장				98-106	157.9	공동개발 권장
			98-409	157.4					98-409	159.0	
			98-413	154.0					98-413	149.6	
			98-414	222.1					98-414	208.2	
			98-415	148.1					98-415	159.2	
			98-416	157.4					98-416	160.2	
			98-410	157.4	공동개발 권장				98-410	160.1	공동개발 권장
			98-411	226.1					98-411	231.2	
			98-412	181.2					98-412	178.8	
			98-417	157.4					98-417	161.3	
			98-418	226.1		98-418	227.2				

기정					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 면적(㎡)	필지		비고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 면적(㎡)	필지		비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3-1-6	3-1-6	4,256.5	98-31	298.2	공동개발 권장	3-1-6	3-1-6	4,280.6	98-31	292.6	공동개발 권장
			98-87	345.5					98-87	339.7	
			98-88	312.4					98-88	306.7	
			98-89	160.7					98-89	160.7	
			98-90	141.8	공동개발 권장				98-90	152.8	공동개발 권장
			98-91	264.8					98-91	273.4	
			98-92	263.8					98-92	270.0	
			98-436	126.6					98-436	131.4	
			98-488	160.6	공동개발 권장				98-488	154.3	공동개발 권장
			98-93	138.8					98-93	141.1	
			98-370	138.8					98-370	141.1	
			98-377	160.0					98-377	153.9	
			98-378	175.2	공동개발 권장				98-378	176.8	공동개발 권장
			98-379	138.8					98-379	142.8	
			98-380	138.8					98-380	142.2	
			98-371	138.8					98-371	140.8	
			98-372	138.8	공동개발 권장				98-372	140.8	공동개발 권장
			98-373	130.6					98-373	136.4	
			98-374	138.8					98-374	140.4	
			98-375	175.2					98-375	170.7	
98-376	161.0	98-376	156.5								
98-381	138.8	98-381	138.8								
98-382	138.8	98-382	140.0								
98-383	130.9	98-383	136.7								
3-1-7 (1)	3-1-7 (1)	784.8	98-7	6.8	공동개발 권장	3-1-7 (1)	3-1-7 (1)	778.0	98-7	6.8	공동개발 권장
			98-74	197.4					98-74	197.4	
			98-75	293.6					98-75	278.8	
			98-76	24.9					98-76	32.9	
			98-429	110.4					98-429	98.4	
			98-430	151.7					98-430	163.7	
3-1-7 (2)	3-1-7 (2)	1,653.0	98-481	162.6	공동개발 권장	3-1-7 (2)	3-1-7 (2)	1,700.3	98-481	162.6	공동개발 권장
			98-32	142.3					98-32	142.3	
			98-82	165.3					98-82	171.9	
			98-445	142.3	공동개발 권장				98-445	147.6	공동개발 권장
			98-83	159.4					98-83	163.8	
			98-84	155.7					98-84	155.7	
			98-85	166.8					98-85	173.9	

기정					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 면적(㎡)	필지		비고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 면적(㎡)	필지		비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98-515	155.7				98-515	160.6			
			98-520	264.7				98-520	276.0			
			98-527	138.2				98-527	145.9			
3-1-8	3-1-8	1,659.0	98-128	150.4	공동개발 권장	3-1-8	3-1-8	1,688.2	98-128	155.5	공동개발 권장	
			98-129	310.7					98-129	312.0		
			98-132	165.9					98-132	164.5		
			98-526	144.3					98-526	148.8		
			98-547	210.0					98-547	210.0		
			98-126	165.4					98-126	168.2		
			98-127	185.5					98-127	187.8		
			98-131	185.7					98-131	190.2		
			98-487	141.1					98-487	151.2		
3-1-9	3-1-9	2,015.2	98-27	74.7	공동개발 권장	3-1-9	3-1-9	2,004.8	98-27	76.8	공동개발 권장	
			98-50	427.1					98-50	431.2		
			98-235	143.3					98-235	141.0		
			98-490	193.8					98-490	193.8		
			98-491	173.0					98-491	173.0		
			98-236	506.8					98-236	504.9		
			98-237	323.3	공동개발 권장				98-237	319.2	공동개발 권장	
			98-494	173.2					98-494	164.9		
3-1-10	3-1-10	2,162.4	98-51	486.0	공동개발 권장	3-1-10	3-1-10	2,101.1	98-51	438.8	공동개발 권장	
			98-238	135.7					98-238	129.7		
			98-522	196.3					98-522	188.0		
			98-523	175.1					98-523	167.4		
			98-54	30.1	공동개발 권장				98-54	35.0	공동개발 권장	
			98-239	669.8					98-239	645.1		
			98-240	469.4					98-240	497.1		
3-1-11	3-1-11	2,300.0	98-28	172.4	공동개발 권장	3-1-11	3-1-11	2,377.7	98-28	184.2	공동개발 권장	
			98-175	159.2					98-175	159.2		
			98-176	159.0					98-176	165.6		
			98-497	159.0					98-497	164.9		
			98-514	159.1					98-514	156.0		
			98-516	172.4					98-516	175.0		
			98-177	318.0	공동개발 권장				98-177	333.1	공동개발 권장	
			98-178	318.0					98-178	334.5		
			98-179	160.8	공동개발 권장				98-179	168.4	공동개발 권장	
			98-180	361.3					98-180	361.3		
98-525	160.8	98-525	175.5									

기정					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 면적(㎡)	필지		비고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 면적(㎡)	필지		비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3-1-12	3-1-12	5,482.2	98-29	154.0	공동개발 권장	3-1-12	3-1-12	5,492.0	98-29	154.0	공동개발 권장
			98-398	159.0					98-398	159.0	
			98-403	172.2					98-403	174.5	
			98-404	156.0					98-404	158.5	
			98-405	159.0					98-405	156.6	
			98-406	160.0					98-406	160.0	
			98-399	159.0	98-399				161.5	공동개발 권장	
			98-400	159.0	98-400				158.1		
			98-401	190.4	98-401				195.8		
			98-402	168.3	98-402				164.1		
			98-407	160.0	98-407				160.0		
			98-408	154.0	98-408				159.3		
			98-169	110.4	98-169				112.1	공동개발 권장	
			98-170	232.7	98-170				232.7		
			98-171	232.7	98-171				232.7		
			98-172	74.0	98-172				72.2		
			98-173	122.2	98-173				121.1		
			98-183	122.3	98-183				128.3		
			98-184	180.8	98-184				173.0	공동개발 권장	
			98-528	128.3	98-528				128.3		
			98-174	227.7	98-174				225.5		
			98-187	229.1	98-187				226.3		
			98-188	229.1	98-188				237.2		
			98-189	229.1	98-189				229.1		
			98-190	128.0	98-190				128.0	공동개발 권장	
			98-191	229.1	98-191				233.0		
			98-566	101.1	98-566				101.1		
			98-192	146.3	98-192				145.3		
98-193	129.0	98-193	127.3								
98-194	125.4	98-194	120.9								
98-479	165.2	98-479	163.3	공동개발 권장							
98-480	165.2	98-480	181.4								
98-562	100.1	98-562	92.6								
98-563	123.5	98-563	119.2								
3-1-13	3-1-13	3,183.0	98-384	137.2	공동개발 권장	3-1-13	3-1-13	3,209.9	98-384	141.3	공동개발 권장
			98-390	155.4					98-390	153.8	
			98-391	174.5					98-391	174.5	

기정					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 면적(㎡)	필지		비고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 면적(㎡)	필지		비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98-392	137.2					98-392	141.1	
			98-393	132.9					98-393	137.9	
			98-394	137.2					98-394	139.8	
			98-395	137.2					98-395	140.8	
			98-40	132.9					98-40	137.9	
			98-385	137.2					98-385	140.9	
			98-386	136.9	공동개발 권장				98-386	138.6	공동개발 권장
			98-387	137.2					98-387	138.3	
			98-388	175.5					98-388	175.5	
			98-389	156.4					98-389	154.5	
			98-396	137.2					98-396	140.7	
			98-397	138.2	공동개발 권장				98-397	141.7	공동개발 권장
			98-151	355.4					98-151	347.4	
			98-152	402.0					98-152	392.3	
			98-153	143.3					98-153	148.1	
			98-564	119.2					98-564	124.8	
3-1-14	3-1-14	3,117.3	98-37	365.6	공동개발 권장	3-1-14	3-1-14	3,127.0	98-37	361.2	공동개발 권장
			98-133	182.8					98-133	187.5	
			98-134	101.0					98-134	101.0	
			98-135	149.5					98-135	139.6	
			98-472	182.8					98-472	177.6	
			98-473	119.9					98-473	122.0	
			98-553	203.5	98-553				203.5	공동개발 권장	
			98-474	38.7	98-474				39.6		
			98-136	108.6	98-136				109.8		
			98-137	198.9	98-137				201.2		
			98-138	379.8	98-138				381.6		
			98-475	133.7	98-475				134.4		
			98-476	165.6	공동개발 권장				98-476	174.9	공동개발 권장
			98-561	198.8					98-561	200.7	
			98-141	160.1					98-141	166.5	
			98-477	142.7	공동개발 권장				98-477	145.1	공동개발 권장
			98-478	117.6					98-478	116.5	
			98-517	167.8					98-517	164.3	
3-1-15	3-1-15	2,434.8	98-43	51.2	공동개발 권장	3-1-15	3-1-15	2,448.6	98-43	48.7	공동개발 권장
			98-48	293.9					98-48	293.9	
			98-55	175.9					98-55	179.9	

기정					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 면적(㎡)	필지		비고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 면적(㎡)	필지		비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98-207	145.5	공동개발 권장				98-207	152.5	공동개발 권장
			98-208	291.6					98-208	291.6	
			98-209	64.1					98-209	61.6	
			98-210	421.2					98-210	428.9	
			98-211	489.9					98-211	498.0	
			98-212	501.5					98-212	493.5	
3-1-16	3-1-16	1,611.5	98-42	14.2	공동개발 권장	3-1-16	3-1-16	1,614.6	98-42	15.1	공동개발 권장
			98-47	294.2					98-47	308.5	
			98-202	38.7					98-202	36.3	
			98-203	278.3					98-203	273.8	
			98-204	157.4					98-204	154.6	
			98-483	157.3					98-483	151.6	
			98-205	159.5	공동개발 권장				98-205	161.8	공동개발 권장
			98-206	352.4					98-206	352.4	
		98-484	159.5		98-484	160.5					
3-1-17	3-1-17	1,746.5	98-200	323.0	공동개발 권장	3-1-17	3-1-17	1,855.8	98-200	397.7	공동개발 권장
			98-201	605.0					98-201	605.0	
			98-197	298.9	공동개발 권장				98-197	318.1	공동개발 권장
			98-198	179.2					98-198	179.2	
			98-485	170.2					98-485	171.6	
			98-486	170.2					98-486	184.2	
3-1-18	3-1-18	1,024.7	98-123	477.0	공동개발 권장	3-1-18	3-1-18	1,131.4	98-123	516.2	공동개발 권장
			98-125	57.5					98-125	70.5	
			98-38	203.3	공동개발 권장				98-38	218.5	공동개발 권장
			98-124	286.9					98-124	326.2	
3-2-1	3-2-1	4,340.3	98-56	504.4	공동개발 권장	3-2-1	3-2-1	4,283.0	98-56	498.3	공동개발 권장
			98-482	192.8					98-482	187.7	
			98-297	522.0	-				98-297	511.0	-
			98-298	522.0	공동개발 권장				98-298	511.2	공동개발 권장
			98-299	522.0					98-299	511.6	
			98-44	526.0	공동개발 권장				98-44	514.1	공동개발 권장
			98-287	519.7					98-287	507.1	
			98-288	128.6	공동개발 권장				98-288	128.6	공동개발 권장
			98-289	515.7					98-289	523.9	
			98-510	129.2					98-510	130.8	
			98-511	128.6					98-511	130.4	
			98-512	129.3					98-512	128.3	

기정					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 면적(㎡)	필지		비고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 면적(㎡)	필지		비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3-2-2	3-2-2	4,006.7	98-302	416.2	공동개발 권장	3-2-2	3-2-2	4,039.5	98-302	437.0	공동개발 권장
			98-303	267.4					98-303	274.1	
			98-312	144.4					98-312	146.7	
			98-313	326.9					98-313	325.3	
			98-529	123.0					98-529	127.1	
			98-304	267.4	공동개발 권장				98-304	270.8	공동개발 권장
			98-305	267.4					98-305	254.1	
			98-306	280.7					98-306	266.6	
			98-309	267.4					98-309	243.4	
			98-310	267.4					98-310	260.2	
			98-311	267.4	공동개발 권장				98-311	272.6	공동개발 권장
			98-291	134.2					98-291	130.6	
			98-292	323.0					98-292	368.4	
			98-293	158.5					98-293	150.2	
			98-504	158.5					98-504	150.5	
			98-505	202.7	공동개발 권장				98-505	191.4	공동개발 권장
98-521	134.2	98-521	170.5								
98-314	277.4	공동개발 권장	98-314	296.3		공동개발 권장					
98-315	267.4		98-315	278.2							
98-323	302.5		98-323	300.0							
3-2-3	3-2-3	3,001.7	98-316	267.4	공동개발 권장	3-2-3	3-2-3	3,262.7	98-316	277.9	공동개발 권장
			98-317	267.4					98-317	277.8	
			98-321	267.8					98-321	263.9	
			98-322	267.8	공동개발 권장				98-322	265.4	공동개발 권장
			98-11	274.4					98-11	480.4	
			98-318	267.4					98-318	277.8	
			98-320	267.8	공동개발 권장				98-320	263.7	공동개발 권장
			98-345	274.4					98-345	281.3	
3-2-4	3-2-4	1,867.8	98-350	290.9	공동개발 권장	3-2-4	3-2-4	1,901.9	98-350	314.3	공동개발 권장
			98-351	267.8					98-351	263.0	
			98-356	284.3					98-356	295.3	
			98-352	267.8	공동개발 권장				98-352	267.8	공동개발 권장
			98-353	234.7					98-353	234.7	
			98-354	254.5					98-354	254.5	
			98-355	267.8					98-355	272.3	
3-2-5	3-2-5	757.0	98-357	161.9	공동개발 권장	3-2-5	3-2-5	840.1	98-357	179.8	공동개발 권장
			98-358	138.0					98-358	264.4	

기정					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 면적(㎡)	필지		비고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 면적(㎡)	필지		비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98-359	137.3					98-359	158.8	
			98-538	127.2					98-538	135.2	
			98-551	92.6					98-551	101.9	
4-1-1	4-1-1	486.0	98-441	486.0	-	4-1-1	4-1-1	504.9	98-441	504.9	-
5-1-1	5-1-1	26,081.0	106-5	249.5	특별계획 구역 (감문천수 공간)	5-1-1	5-1-1	25,809.9	106-5	229.6	특별계획 구역 (감문천수 공간)
			106-6	1,454.2					106-6	1,347.3	
			106-7	8,617.3					106-7	8,617.3	
			106-8	11,820.6					106-8	11,820.6	
			106-10	327.2					106-10	327.2	
			106-11	1,233.6					106-11	1,233.6	
			106-12	552.0					106-12	552.0	
			산2-10	1,826.6					125-5	1,682.3	
6-1-1	6-1-1	49,549.3	102-2	29,237.1	특별계획 구역 (이민사 박물관)	6-1-1	6-1-1	49,487.2	102-2	29,280.2	특별계획 구역 (이민사 박물관)
			102-11	13,143.7					102-11	13,184.5	
			102-32	1,199.8					102-32	1,201.4	
			산1	5,968.7					125	5,821.1	

-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변경 내 용	변 경 사 유
1-1-1	1-1-1	○면적 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2-1-1	2-1-1	○면적 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2-1-2	2-1-2	○면적 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2-1-3	2-1-3	○면적 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2-1-4	2-1-4	○면적 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2-1-5	2-1-5	○면적 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2-1-6	2-1-6	○면적 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2-1-7	2-1-7	○면적 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2-2-1	2-2-1	○면적 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2-2-2	2-2-2	○면적 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2-2-3	2-2-3	○면적 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2-2-4	2-2-4	○면적 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2-2-5	2-2-5	○면적 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변경 내용	변경 사유
2-2-6	2-2-6	○면적 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2-3-1	2-3-1	○면적 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2-4-1	2-4-1	○면적 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3-1-1	3-1-1	○면적 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3-1-2	3-1-2	○면적 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3-1-3	3-1-3	○면적 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3-1-4	3-1-4	○면적 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3-1-5	3-1-5	○면적 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3-1-6	3-1-6	○면적 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3-1-7 (1)	3-1-7 (1)	○면적 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3-1-7 (2)	3-1-7 (2)	○면적 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3-1-8	3-1-8	○면적 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3-1-9	3-1-9	○면적 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3-1-10	3-1-10	○면적 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3-1-11	3-1-11	○면적 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3-1-12	3-1-12	○면적 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3-1-13	3-1-13	○면적 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3-1-14	3-1-14	○면적 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3-1-15	3-1-15	○면적 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3-1-16	3-1-16	○면적 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3-1-17	3-1-17	○면적 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3-1-18	3-1-18	○면적 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3-2-1	3-2-1	○면적 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3-2-2	3-2-2	○면적 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3-2-3	3-2-3	○면적 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3-2-4	3-2-4	○면적 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3-2-5	3-2-5	○면적 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4-1-1	4-1-1	○면적 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5-1-1	5-1-1	○면적 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6-1-1	6-1-1	○면적 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 건축물에 관한 결정 조서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1-1-1	북성동1가 98-3 일대 (결정도면 참조)	용도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에 따름	
		건폐율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에 따름	
		용적률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에 따름	
		높이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에 따름	
		건축선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에 따름	
2-1-1	북성동1가 98-8 일대 (결정도면 참조)	용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1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기준 350% 이하 ○ 허용 600% 이하 ○ 상한 800% 이하	
		높이	○ GL+22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변 2m, 3m (결정도 참조)	
2-1-2	북성동1가 98-52 일대 (결정도면 참조)	용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1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기준 350% 이하 ○ 허용 600% 이하 ○ 상한 800% 이하	
		높이	○ GL+26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변 3m, 중로의 2m (결정도 참조)	
2-1-3	북성동1가 98-532 일대 (결정도면 참조)	용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1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기준 350% 이하 ○ 허용 600% 이하 ○ 상한 800% 이하	
		높이	○ GL+30m 이하	
		주차진입 공동출입구 건축선	○ 필지별 개별 개발시 적용(공동개발시 미적용) ○ 건축한계선 - 월미문화의거리변 4m, 중로의 2m (결정도 참조)	
2-1-4	북성동1가 98-10일대 (결정도면 참조)	용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1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기준 350% 이하 ○ 허용 600% 이하 ○ 상한 800% 이하	
		높이	○ GL+34m 이하	
		주차진입 공동출입구	○ 필지별 개별 개발시 적용(공동개발시 미적용)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월미문화의거리변 4m, 중로변 3m, 중로의 2m (결정도 참조)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2-1-5	북성동1가 98-434 일대 (결정도면 참조)	용 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1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기준 350% 이하 ○ 허용 600% 이하 ○ 상한 800% 이하	
		높 이	○ GL+42m 이하	
		주차진입 공동출입구	○ 필지별 개별 개발시 적용(공동개발시 미적용)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월미문화의거리변 4m, 중로변 3m, 중로의 2m (결정도 참조)	
2-1-6	북성동1가 98-444 일대 (결정도면 참조)	용 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1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기준 350% 이하 ○ 허용 600% 이하 ○ 상한 800% 이하	
		높 이	○ GL+42m 이하	
		주차진입 공동출입구	○ 필지별 개별 개발시 적용(공동개발시 미적용)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월미문화의거리변 4m, 중로의 2m (결정도 참조)	
2-1-7	북성동1가 98-443 일대 (결정도면 참조)	용 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1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기준 350% 이하 ○ 허용 600% 이하 ○ 상한 800% 이하	
		높 이	○ GL+42m 이하	
		주차진입 공동출입구	○ 필지별 개별 개발시 적용(공동개발시 미적용)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월미문화의거리변 4m, 중로의 2m (결정도 참조)	
2-2-1	북성동1가 98-26일대 (결정도면 참조)	용 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4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기준 350% 이하 ○ 허용 600% 이하 ○ 상한 800% 이하	
		높 이	○ GL+26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변 3m, 중로의 2m (결정도 참조)	
2-2-2	북성동1가 98-225 일대 (결정도면 참조)	용 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4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기준 350% 이하 ○ 허용 600% 이하 ○ 상한 800% 이하	
		높 이	○ GL+34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의 2m (결정도 참조)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2-2-3	북성동1가 98-227 일대 (결정도면 참조)	용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4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기준 350% 이하 ○ 허용 600% 이하 ○ 상한 800% 이하	
		높이	○ GL+42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변 3m, 중로의 2m (결정도 참조)	
2-2-4	북성동1가 98-524 일대 (결정도면 참조)	용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5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기준 350% 이하 ○ 허용 600% 이하 ○ 상한 800% 이하	
		높이	○ GL+46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변 3m, 중로의 2m (결정도 참조)	
2-2-5	북성동1가 98-507 일대 (결정도면 참조)	용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5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기준 350% 이하 ○ 허용 600% 이하 ○ 상한 800% 이하	
		높이	○ GL+46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의 2m (결정도 참조)	
2-2-6	북성동1가 98-507 일대 (결정도면 참조)	용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5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기준 350% 이하 ○ 허용 600% 이하 ○ 상한 800% 이하	
		높이	○ GL+46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의 2m (결정도 참조)	
2-3-1	북성동1가 98-59 일대 (결정도면 참조)	용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1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기준 350% 이하 ○ 허용 600% 이하 ○ 상한 800% 이하	
		높이	○ GL+42m 이하	
		주차진입 공동출입구	○ 필지별 개별 개발시 적용(공동개발시 미적용) ○ 건축한계선 - 월미문화의거리변 4m, 중로변 3m, 중로의 2m (결정도 참조)	
2-4-1	북성동1가 98-62 일대 (결정도면 참조)	용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1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기준 350% 이하 ○ 허용 600% 이하 ○ 상한 800% 이하	
		높이	○ GL+38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월미문화의거리변 4m, 중로변 3m, 중로의 2m (결정도 참조)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3-1-1	북성동1가 98-569 일대 (결정도면 참조)	용 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3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기준 350% 이하 ○ 허용 600% 이하 ○ 상한 800% 이하	
		높 이	○ GL+26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변 3m, 중로의 2m (결정도 참조)	
3-1-2	북성동1가 98-78 일대 (결정도면 참조)	용 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3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기준 350% 이하 ○ 허용 600% 이하 ○ 상한 800% 이하	
		높 이	○ GL+26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변 3m, 중로의 2m (결정도 참조)	
3-1-3	북성동1가 98-25 일대 (결정도면 참조)	용 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3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기준 350% 이하 ○ 허용 600% 이하 ○ 상한 800% 이하	
		높 이	○ GL+34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의 2m (결정도 참조)	
3-1-4	북성동1가 98-493 일대 (결정도면 참조)	용 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3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기준 350% 이하 ○ 허용 600% 이하 ○ 상한 800% 이하	
		높 이	○ GL+34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의 2m (결정도 참조)	
3-1-5	북성동1가 98-101 일대 (결정도면 참조)	용 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3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기준 350% 이하 ○ 허용 600% 이하 ○ 상한 800% 이하	
		높 이	○ GL+34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의 2m (결정도 참조)	
3-1-6	북성동1가 98-436 일대 (결정도면 참조)	용 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3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기준 350% 이하 ○ 허용 600% 이하 ○ 상한 800% 이하	
		높 이	○ GL+34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의 2m (결정도 참조)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3-1-7 (1)	북성동1가 98-16 일대 (결정도면 참조)	용 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3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기준 350% 이하 ○ 허용 600% 이하 ○ 상한 800% 이하	
		높 이	○ GL+26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변 3m, 중로의 2m (결정도 참조)	
3-1-7 (2)	북성동1가 98-76 일대 (결정도면 참조)	용 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3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기준 350% 이하 ○ 허용 600% 이하 ○ 상한 800% 이하	
		높 이	○ GL+34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의 2m (결정도 참조)	
3-1-8	북성동1가 98-487 일대 (결정도면 참조)	용 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3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기준 350% 이하 ○ 허용 600% 이하 ○ 상한 800% 이하	
		높 이	○ GL+34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의 2m (결정도 참조)	
3-1-9	북성동1가 98-27 일대 (결정도면 참조)	용 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3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기준 350% 이하 ○ 허용 600% 이하 ○ 상한 800% 이하	
		높 이	○ GL+42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의 2m (결정도 참조)	
3-1-10	북성동1가 98-54 일대 (결정도면 참조)	용 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3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기준 350% 이하 ○ 허용 600% 이하 ○ 상한 800% 이하	
		높 이	○ GL+42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변 3m, 중로의 2m (결정도 참조)	
3-1-11	북성동1가 98-175 일대 (결정도면 참조)	용 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3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기준 350% 이하 ○ 허용 600% 이하 ○ 상한 800% 이하	
		높 이	○ GL+42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의 2m (결정도 참조)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3-1-12	북성동1가 98-172 일대 (결정도면 참조)	용 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3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기준 350% 이하 ○ 허용 600% 이하 ○ 상한 800% 이하	
		높 이	○ GL+42m 이하 - 98-29, 98-398, 98-403, 98-404, 98-405, 98-406, 98-399, 98-400, 98-401, 98-402, 98-407, 98-408, 98-169, 98-183, 98-170, 98-171, 98-172, 98-184, 98-173, 98-528 ○ 3-4-12 GL+46m 이하 - 98-174, 98-187, 98-188, 98-189, 98-190, 98-191, 98-566, 98-192, 98-193, 98-194, 98-479, 98-480, 98-562, 98-563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의 2m (결정도 참조)	
3-1-13	북성동1가 98-155 일대 (결정도면 참조)	용 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3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기준 350% 이하 ○ 허용 600% 이하 ○ 상한 800% 이하	
		높 이	○ GL+42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의 2m (결정도 참조)	
3-1-14	북성동1가 98-474 일대 (결정도면 참조)	용 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3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기준 350% 이하 ○ 허용 600% 이하 ○ 상한 800% 이하	
		높 이	○ GL+42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의 2m (결정도 참조)	
3-1-15	북성동1가 98-43 일대 (결정도면 참조)	용 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3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기준 350% 이하 ○ 허용 600% 이하 ○ 상한 800% 이하	
		높 이	○ GL+46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변 3m, 중로의 2m (결정도 참조)	
3-1-16	북성동1가 98-42 일대 (결정도면 참조)	용 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3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기준 350% 이하 ○ 허용 600% 이하 ○ 상한 800% 이하	
		높 이	○ GL+46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의 2m (결정도 참조)	
3-1-17	북성동1가 98-485 일대 (결정도면 참조)	용 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3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기준 350% 이하 ○ 허용 600% 이하 ○ 상한 800% 이하	
		높 이	○ GL+46m 이하 (결정도 참조)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변 3m, 중로의 2m (결정도 참조)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3-1-18	북성동1가 98-125 일대 (결정도면 참조)	용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3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기준 350% 이하 ○ 허용 600% 이하 ○ 상한 800% 이하	
		높이	○ GL+42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변 3m, 중로의 2m (결정도 참조)	
3-2-1	북성동1가 98-511 일대 (결정도면 참조)	용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2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기준 350% 이하 ○ 허용 600% 이하 ○ 상한 800% 이하	
		높이	○ GL+50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변 3m, 중로의 2m (결정도 참조)	
3-2-2	북성동1가 98-529 일대 (결정도면 참조)	용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2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기준 350% 이하 ○ 허용 600% 이하 ○ 상한 800% 이하	
		높이	○ GL+50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변 3m, 중로의 2m (결정도 참조)	
3-2-3	북성동1가 98-322 일대 (결정도면 참조)	용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2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기준 350% 이하 ○ 허용 600% 이하 ○ 상한 800% 이하	
		높이	○ GL+50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변 3m, 중로의 2m (결정도 참조)	
3-2-4	북성동1가 98-353 일대 (결정도면 참조)	용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2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기준 350% 이하 ○ 허용 600% 이하 ○ 상한 800% 이하	
		높이	○ GL+50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변 3m, 중로의 2m (결정도 참조)	
3-2-5	북성동1가 98-551 일대 (결정도면 참조)	용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2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기준 350% 이하 ○ 허용 600% 이하 ○ 상한 800% 이하	
		높이	○ GL+50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변 3m, 중로의 2m (결정도 참조)	
4-1-1	북성동1가 98-441 (결정도면 참조)	용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D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이	○ GL+22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월미문화의거리변 3m (결정도 참조)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5-1-1	북성동1가 106-8 일대 (결정도면 참조)	용도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에 따름	
		건폐율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에 따름	
		용적률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에 따름	
		높이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에 따름	
		건축선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에 따름	
		기타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에 따름	
6-1-1	북성동1가 102-2 일대 (결정도면 참조)	용도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에 따름	
		건폐율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에 따름	
		용적률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에 따름	
		높이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에 따름	
		건축선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에 따름	
		기타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에 따름	
주차장 1	북성동1가 98-39 일원 (결정도면 참조)	용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P	
		건폐율	○ 90% 이하	
		용적률	○ 540% 이하	
		높이	○ GL+24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변 3m, 중로의 2m (결정도 참조)	
주차장 2	북성동1가 98-567 일원 (결정도면 참조)	용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P	
		건폐율	○ 90% 이하	
		용적률	○ 540% 이하	
		높이	○ GL+24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변 3m (결정도 참조)	
주차장 3	북성동1가 98-16 일원 (결정도면 참조)	용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P	
		건폐율	○ 90% 이하	
		용적률	○ 540% 이하	
		높이	○ GL+22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변 3m (결정도 참조)	
주차장 4	북성동1가 98-115 (결정도면 참조)	용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P	
		건폐율	○ 90% 이하	
		용적률	○ 540% 이하	
		높이	○ GL+24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의 2m (결정도 참조)	

※ 건축물의 높이계획과 관련하여 본 지구내 건축 및 개발시는 해상교통관제센터와 건축허가 전 협의를 통해 월미RS의 관제범위와 건축물의 상층 여부에 대해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 차량동선 관한 계획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1-1-1, 2-1-1, 2-1-2, 2-2-1, 2-3-1, 2-4-1, 3-1-1, 3-1-2, 3-1-7(1), 3-1-17, 3-2-1, 3-2-2, 3-2-3, 3-2-4, 3-2-5	결정도면 참조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 주요 도로변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설정 - 2-1-2, 98-498 차량출입구 제외

- 주차장 진입 공동출입구 계획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2-1-3, 2-1-4, 2-1-5, 2-1-6, 2-4-1	결정도면 참조	주차장 진입 공동 출입로	○ 필지별 개별 개발시 적용 (공동개발시 미적용)
2-3-1			○ 필지별 개발시 또는 공동개발시 주차장 진출입 공간을 공동으로 설치
98-255, 98-259, 98-338, 98-339, 98-444, 98-419, 98-285, 68-61	결정도면 참조	주차장 진입 공동 출입구	○ 주차장 진입 공동 출입로 조성시 적용

- 대지 내 공지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대상지 전구역	대상지 전구역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성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와 접하는 경우나 월미 문화의 거리변은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기하기 위하여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인도부속형 전면공지로 조성하는 것을 권장하며, 신축시 개발주체가 이를 시행 - 차도 또는 보도와 차도가 혼용되는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인 차도부속형 전면공지로 조성하는 것을 권장하며, 신축시 개발주체가 이를 시행 - 특별계획구역 S1(1-1-1), 3호 주차장 서측 소로 1-1호선변의 15m 폭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는 보행데크 형태로 조성할 것을 권장하며, 특별계획구역의 세부계획 수립시 이를 결정 - 전면공지 조성시는 인접한 차도 또는 보도와 높이차가 없도록 조성 -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건축물의 지하구조물, 담장, 계단, 화단 등 차량 및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 ○ 전면공지를 조성한 대지는 별도로 정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주차장 진입 공동 출입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 진입 공동 출입로가 계획된 대지에서는 주차를 위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조성하여야 하며, 신축시 개발주체가 이를 시행 ○ 조성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정도에서 정한 위치에 도로에 준하여 포장 등을 하여 조성 - 지상부에서 8m 높이까지 담장, 계단, 화단 등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장치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원활한 차량 진출입을 위해 주차출입구와 높이차가 없도록 조성하여야 함 ○ 주차장 진입 공동 출입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본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함(단, 공동개발이 계획된 일단의 필지 전체가 공동으로 개발되어 맹지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차장 진입 공동 출입로를 조성하지 않도록 하며 이에 따른 인센티브 또한 부여하지 않음) ○ 주차장 진입 공동 출입로의 조성방법 변경은 경미한 변경에 의함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공개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공지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 및 면적, 설치방식 등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제36조 규정을 준수 ○ 공개공지는 민간부문에 확보하여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개공지는 지상부에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면(한 면이 4분의 1이상 접할 것)으로서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중로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대지는 교차지점에 설치하도록 함 ○ 조성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공지 조성시 최소폭은 5미터 이상으로 하고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이어야 함 -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야외무대(지붕 등 그 밖에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함)·소규모 공중화장실(33제곱미터 미만으로서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에 한함) 등 다종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 공개공지를 조성한 대지는 별도로 정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 공개공지의 설치위치 및 조성방법 변경은 경미한 변경에 의함
대상지 전구역	대상지 전구역	대지의 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대지의 조경면적 확보기준은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제22조 및 「건축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국토교통부 조경기준을 적용 ○ 수종은 인천시 향토수종을 주 수종으로 하되 계절감과 지역적 특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보조식재를 하고, 수경공간을 조성할 것을 권장 ○ 대지의 조경을 전면도로면 및 각각부에 설치시 용적률 완화 부여 ○ 대지의 조경 설치위치 및 조성방법 변경 및 신규설치는 경미한 변경에 의함
		공공보행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된 대지는 지정된 위치의 실외 또는 실내에 규정된 폭원 이상으로 24시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보행통로를 조성하여야 함 ○ 조성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보행통로는 접하는 보도 혹은 도로와 단차가 없어야 하며, 연접대지와 공동으로 설치되는 경우도 연접대지간 단차가 없어야 함 - 공공보행통로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는 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음 - 공공보행통로로 연결되는 양측 도로의 고저차가 있을 경우 경사로로 설치하며, 건축물의 부속되는 주차장 및 서비스 공간 등 보행통행시 장애가 되는 공간과는 차폐하여 통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함 -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이 없는 바닥재료 선정 및 포장을 하여야 하며, 야간 통행에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공공보행통로와 접하는 건축물은 캐노피를 설치할 것을 권장함 ○ 공공보행통로의 위치변경 및 신규설치는 경미한 변경에 의함

- 환경친화적 건축물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대상지 전구역	대상지 전구역	옥상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상녹화 조성시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의 인정면적은 옥상녹화 조성면적 가운데 계단탑, 설비면적, 대지안의 조경 의무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함 ○ 옥상에 녹화를 조성하였을 경우에는 옥상녹화면적의 100분의 50을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인정 ○ 옥상녹화를 조성한 대지는 대지의 조경 의무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용적률 완화 부여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대상지 전구역	대상지 전구역	녹색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조량이 하루 4시간 이상 되는 곳을 선정 ○ 잔디는 주차면보다 1~2cm 아래에 식재하고 관수 및 배수시설 설치 ○ 녹색주차장 설치시 설치면적에 의해 용적률 완화 부여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등 관련 법령에 의거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을 권장 ○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시 인증 등급별 용적률 완화 부여
		녹색 건축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녹색건축 인증기준 등 관련 법령에 의거 녹색건축 인증을 권장 ○ 녹색건축 인증시 인증 등급별 용적률 완화 부여

-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대상지 전구역	대상지 전구역	1층 바닥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되는 상업용도 건물의 1층 바닥높이는 접한 보도 또는 도로와 10cm 이상의 차이를 둘 수 없음 ○ 경사지의 경우 접한 보도 또는 도로의 높이는 높은 쪽을 기준
		외벽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벽면처리의 통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물은 모든 외벽의 의장, 재료, 색체에 있어 조화 유지 ○ 개구부 없는 벽면의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 20m 이상의 도로 및 폭 10m 이상 도로의 교차로에 면한 건축물은 개구부가 없는 벽면 가로노출 불가 ○ 개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1층 전면은 동일한 용도(점포) 1개당 2개소 이상의 출입구 설치 불가 ○ 투시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 20m 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 1층 전면 벽면의 50% 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 - 당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예외 ○ 측면 이격공지의 차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의 측면 경계선과 건물사이의 이격거리가 3m 미만이고 이격부분이 통로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이격공지는 차폐조경, 담, 문 등으로 차폐 ○ 서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 15m 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서터는 투시형 서터 사용 ○ 지하층 출입구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단위계획으로 규정된 측면 이격공지의 차폐목적 이외의 지하층 출입구를 설치할 경우 출입구에는 지붕구조물 설치 불가
대상지 전구역	대상지 전구역	옥외 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출간판은 1개 건물에 1줄만 설치하여야 함. - 돌출간판의 규격은 건물높이가 1층 이하인 경우에는 가로 1m 이내, 세로 1m 이내로 하고, 2층 이상인 경우에는 가로 1m 이내, 세로 2m 이내 크기로 제한 - 애드벌룬, 세로형간판, 창문이용광고물, 공연간판은 설치를 금지 - 기타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표시방법을 준함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지번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모든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 또는 대문 등 통행인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대지의 지번 표시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외벽의 재료는 주변경관과 조화된 질이 높은 것의 사용을 권장 ○ 건축물 외벽의 색채기조는 인접건축물과 조화 및 품격있는 중후한 색조의 사용을 권장
		야간 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 20m 이상의 도로에 면한 대지에 신축되는 건물은 쇼윈도를 설치하는 등 가로외벽의 분위기를 배려할 수 있는 건축물의 형태 및 조명시설의 설치를 권장 ○ 폭 20m 이상 도로에 면하는 신축 또는 재건축되는 건물은 가로외벽을 밝힐 수 있는 야간조명 등의 설치를 권장(조명의 방향은 상향 권장) ○ 옥외에 설치하는 미술 장식품의 경우 야간조명의 설치를 권장
		건축물 형태	○ 건축물의 형태가 탑상형으로 건축시 충분한 오픈스페이스(녹지, 휴게소, 광장 등)가 확보 가능토록 건축
		경사 지붕	○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한 필지에 공동주택을 건축할 경우 가로경관이나 옥상경관의 향상을 위하여 가능한 경사형 지붕으로 처리할 것을 권장
		1층 전면부 입면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상기의 건축물 외관에 대한 규제사항과 함께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추가로 준수 ○ 1층 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층의 층고는 인접건물 1층 층고와 10cm 이상 차이를 둘 수 없음 - 단, 인접 건물과 기능상의 차이가 확연하거나 지형상 층고의 통일이 어렵다고 당해 건축위원회가 판단할 경우에는 예외 ○ 외벽면 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층 전면 외벽면의 재료는 인접건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건축심의시 인접한 건물(최우 각 3개씩)의 입면색채표본과 대상지 건축물의 1층 전면 색채표본을 제출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 ○ 개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층 전면에는 투시형태의 개구부 설치 권장

- 지하공간에 관한 계획

위치(대상지)	구 분	계 획 내 용
월미지구단위계획 구역 전역	지하층 건축물 용도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층 건축물 용도는 지상에 허용되는 모든 건축물(주차장 제외) 용도를 제한 ○ 단, 사전제해영향성 검토 협의내용 변경시 이에 따름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도 : 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계재 생략)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도
 - 건축물에 관한 계획 : 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계재 생략)
 -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계재 생략)

마.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결정조서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S1	1-1-1, 완충녹지1	개발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 참고) ○개발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이전적지에 대해 입지적 장점을 활용한 거점개발 - 숙박·위락·문화 복합기능 부여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시행령 별표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골프연습장, 제조업소·수리점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제7호 판매시설 중 나목 및 다목 - 제9호 의료시설(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 제13호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15호 숙박시설 가운데 나목 관광숙박시설 -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가목 주차장 - 제17호 공장 가운데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단, 인천광역시 조례 제38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공장에 한함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지하층 : 모든 건축물 (주차장 제외)
		건폐율	○특별계획구역 세부계획 수립시 결정	
		용적률	○특별계획구역 세부계획 수립시 결정	
		높이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해상교통관제센터 협의전제)	
		건축물 형태	○해안변 건축입면부 차경 확보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로변 3m, 소로1-1호선변 15m 	
		차량동선	○중로1-22호선변 차량출입구 2개소 허용	
주차장	○주차장용지 15%이상 의무 확보			

- 주) 1.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인허가권자와 협의하여 결정
 2. 상기 지침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 후 결정 (도시계획과, 도시재생정책관, 국민안전처 등)
 3. 1호 완충녹지는 특별계획구역 사업시행자가 조성하여 기부채납 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 부여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S2	5-1-1	개발방향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개발방향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 및 용도지역 변경 이후 본 지침 적용 가능 - 단기방안 : 매립목적 범위 내에서 해양박물관 설치 - 장기방안 : 해양박물관과 연계한 관광복합컴플렉스 및 친수공간으로 거점개발 유도	
		용 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월 제외)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골프연습장, 제조업소·수리점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제7호 판매시설 중 나목 및 다목 - 제9호 의료시설(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 제13호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 - 제15호 숙박시설 가운데 나목 관광숙박시설 -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가목 주차장 - 제27호 관광휴게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지하층 : 모든 건축물 (주차장 제외) 단, 지하층에 대해서는 세부계획 수립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축물 지하층의 재해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불허용도를 변경할 수 있음
		건폐율	○ 특별계획구역 세부계획 수립시 결정	
		용적률	○ 특별계획구역 세부계획 수립시 결정	
		높 이	○ 특별계획구역 세부계획 수립시 결정 (해상교통관제센터 협의전제)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변 5m, 해안변 5m	
공공보행통로	○ 평화의 등대 연계			

- 주) 1. 해양박물관은 해양수산부에 투자유치 예정인 “인천해양박물관” 사업계획을 반영
 2.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인허가권자와 협의하여 결정
 3. 상기 지침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 후 결정 (도시계획과, 도시재생정책관, 국민안전처, 항만공항시설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S3	6-1-1	개발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개발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의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월미공원에서 제척) 후 적용 가능 - 단기방안 : 용도지역 변경전까지 근린공원 유지 - 장기방안 : 해양문화복합단지 조성으로 거점 개발 유도 	
		용 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골프연습장, 제조업소·수리점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제7호 판매시설 중 나목 및 다목 - 제9호 의료시설(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 제13호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 - 제15호 숙박시설 가운데 나목 관광숙박시설 -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가목 주차장 - 제27호 관광휴게시설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지하층 : 모든 건축물 (주차장 제외)
		건폐율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용적률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높 이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해상교통관제센터 협의전제)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로변 5m 	
		공공보행통로	○ 이민사박물관역~이민사박물관 연계	

주) 1.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인허가권자와 협의하여 결정
 2. 상기 지침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 후 결정 (도시계획과, 도시재생정책관, 국민안전처 등)
 3. 특별계획구역 내 이민사박물관은 존치

마. 인센티브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구 분		완화기준	비 고	
공동개발	획지계획 준수시	○ 기준용적률 × 0.2	○ 획지계획 준수시 적용	
	권장사항 준수시	○ 기준용적률 × (공동개발 적용 면적 ÷ 총 공동개발 계획 면적) × 0.2	○ 공동개발 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	
건축물 용도	권장 용도	○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 연면적 ÷ 건축연면적) × 0.2	○ 총 연면적 20% 이상시 인정 ○ 부설주차장 면적 제외	
	1층 권장용도 준수시	○ 기준용적률 × (1층 권장용도 연면적 ÷ 1층 건축 연면적) × 0.2	○ 1층 연면적 30% 이상시 인정 ○ 부설주차장 면적 제외	
대지내 공지	공개 공지	위치 준수시	○ 기준용적률 × 0.1	-
	주차장 진입 공동 출입로	구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의무면적, 의무면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 ÷ 대지면적] × a	○ 필로티 a=1.2, 개방형 a=2.0
		위치 및 규모 준수·구성시	○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a	○ 필로티 a=1.2, 개방형 a=2.0
건축 한계선	전면공지 구성시	○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2.0	-	
대지의 조경	대지의 조경	전면가로 및 가각부 구성시	○ 기준용적률 × 0.025	-
환경 친화적 건축물	옥상 녹화	준수시	○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3	○ 법적 조경면적 제외
	녹색 건축	인증시	○ 최우수 : 기준용적률 × 0.12 ○ 우수 : 기준용적률 × 0.08 ○ 우량 : 기준용적률 × 0.04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녹색건축 인증기준 적용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시	○ 1등급 : 기준용적률 × 0.08 ○ 2등급 : 기준용적률 × 0.06 ○ 3등급 : 기준용적률 × 0.04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적용
	녹색 주차장	구성시	○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 × 0.2	-
주차 및 차량 동선	주차장 진입 공동 출입구	출입구 구성·개방시	○ 기준용적률 × 0.1	○ 결정도상 적용 대지
	부설 주차장 확보	법정주차 대수 15% 이상 추가 확보시	○ 기준용적률 × 0.1	-

- 주) 1. 특별계획구역은 세부계획수립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름
 2. 가구단위 공동개발시는 별도의 인센티브 기준을 적용
 3. 허용용적률 산정 : 기준용적률 + ∑(각 항목별 용적률 인센티브) ≤ 허용용적률
 4. 공동개발 면적이란 권장하고 있는 공동개발계획내에서 이루어지는 2개 이상의 선택적 공동개발을 말함
 5. 권장용도면적이란 실제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부분과 계단실,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 공용부분을 포함한 면적을 말함
 6. 대지 내 공지에 관한 용적률 완화시 공지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함
 - 단, 전면공지가 공동주차진출입로와 중복되어 공동주차진출입로로 조성할 경우 해당면적에 대한 인센티브는 중복 적용함

○ 가구단위 공동개발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구 분		완화기준	비 고
공동개발	가구 전체 공동개발시	○ 기준용적률 × 0.2	○ 가구내 전체필지를 공동개발시에만 적용
건축물 용도	주거복합 건축물 개발시	○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 연면적 ÷ 건축연면적) × 0.2	○ 인천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대지내 공지	공개 공지	위치 준수시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 기준용적률 × 0.1 ○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의무면적, 의무면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 ÷ 대지면적] × a
	건축 한계선	전면공지 조성시	○ 금 회 :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2.0
대지의 조경	대지의 조경	전면가로 및 각각부 조성시	○ 기준용적률 × 0.025
환경 친화적 건축물	옥상 녹화	준수시	○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3
	녹색 건축	인증시	○ 최우수 : 기준용적률 × 0.12 ○ 우수 : 기준용적률 × 0.08 ○ 우량 : 기준용적률 × 0.04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시	○ 1등급 : 기준용적률 × 0.08 ○ 2등급 : 기준용적률 × 0.06 ○ 3등급 : 기준용적률 × 0.04
	녹색 주차장	조성시	○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 × 0.2
주차 및 차량 동선	부설 주차장 확보	법정주차 대수 15% 이상 추가 확보시	○ 기준용적률 × 0.1

- 주) 1. 가구단위 공동개발시는 본 기준에 따른 인센티브만 적용하며 일반적 인센티브를 중복적용하지 않음
 2. 허용용적률 산정 : 기준용적률 + ∑(각 항목별 용적률 인센티브) ≤ 허용용적률
 3. 대지 내 공지에 관한 용적률 완화시 공지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함
 - 단, 전면공지가 공동주차진출입로와 중복되어 공동주차진출입로로 조성할 경우 해당면적에 대한 인센티브는 중복 적용함

○ 공공시설 부지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

- 허용용적률 + [1.5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등 제공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이내

※ 건축물 용도 분류표(변경없음)

구분		용도
C1	지정용도	○ 해당사항 없음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옥외골프연습장, 제조업소·수리점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제7호 판매시설 중 나목 및 다목 - 제9호 의료시설(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 제13호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15호 숙박시설 가운데 나목 관광숙박시설 - 제16호 위락시설 -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가목 주차장 - 제27호 관광휴게시설
	권장용도	○ 전층 권장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점, 휴게음식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 중 다목 상점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지하층 : 모든 건축물(주차장 제외)
C2	지정용도	○ 해당사항 없음
	허용용도	○ 가구단위 공동개발시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단, 주거복합건축물로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옥외골프연습장, 제조업소·수리점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제7호 판매시설 중 나목 및 다목 - 제9호 의료시설(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 제13호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 - 제15호 숙박시설 가운데 나목 관광숙박시설 - 제16호 위락시설 -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가목 주차장 - 제27호 관광휴게시설
	권장용도	○ 전층 권장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가운데 나목 관광숙박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지하층 : 모든 건축물(주차장 제외)

구분		용도
C3	지정용도	○ 해당사항 없음
	허용용도	○ 가구단위 공동개발시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단, 주거복합건축물로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1호 단독주택(단, 기존 단독주택 용도로 건축허가받은 연면적에 한하여 허용)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옥외골프연습장, 제조업소·수리점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제7호 판매시설 중 나목 및 다목 - 제9호 의료시설(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 제13호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 - 제15호 숙박시설 가운데 나목 관광숙박시설 - 제16호 위락시설 -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가목 주차장 - 제27호 관광휴게시설
	권장용도	○ 전층 권장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지하층 : 모든 건축물(주차장 제외)
C4	지정용도	○ 해당사항 없음
	허용용도	○ 가구단위 공동개발시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단, 주거복합건축물로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함) ○ 가구단위 공동개발 이외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옥외골프연습장, 제조업소·수리점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제7호 판매시설 중 나목 및 다목 - 제9호 의료시설(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 제13호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15호 숙박시설 가운데 나목 관광숙박시설 - 제16호 위락시설 -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가목 주차장 - 제27호 관광휴게시설
	권장용도	○ 1층 권장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전층 권장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 중 다목 상점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지하층 : 모든 건축물(주차장 제외)

구분		용도
C5	지정용도	○ 해당사항 없음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옥외골프연습장, 제조업소·수리점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제7호 판매시설 중 나목 및 다목 - 제9호 의료시설(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 제13호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15호 숙박시설 가운데 나목 관광숙박시설 - 제16호 위락시설 -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가목 주차장 - 제27호 관광휴게시설
	권장용도	○ 1층 권장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전층 권장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 중 다목 상점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지하층 : 모든 건축물(주차장 제외)
D	지정용도	○ 해당사항 없음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수리점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 제외) - 제7호 판매시설 중 나목 및 다목 - 제9호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 제13호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15호 숙박시설 가운데 나목 관광숙박시설 - 제27호 관광휴게시설 중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권장용도	○ 전층 권장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점, 휴게음식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 중 다목 상점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지하층 : 모든 건축물(주차장 제외)
P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가목 주차장
	허용용도	○ 해당사항 없음
	권장용도	○ 해당사항 없음
	불허용도	○ 해당사항 없음

사.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

1. 공개공지의 위치·조성방법의 변경 및 신규 설치
2. 대지의 조경 위치·조성방법의 변경 및 신규 설치
3. 구역과 연접한 대지의 공동개발(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것을 전제함)
4. 주차장 진입 공동 출입로의 조성방법
5. 공공보행통로의 위치 변경 및 신규설치
6.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변에서의 주차출입구 변경(신설)에 따른 차량진출입 불허구간의 변경
7.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의 변경(관련 법규상 경미한 변경 범위 이내)

4.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계재 생략)

5. 지형도면 : 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계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인천광역시 중구 고시 제2019-123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중구청(도시개발과 ☎760-7518)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19. 7. 29.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1.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임

2.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 일원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도로결정(경미한 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2	20	국지	1,485	대2-17	중1-138	일반	98-65	69.11.3	인천광역시고시 제2000-33호
변경	중로	1	12	20	국지	1,485	대2-17	중1-138	일반	98-65		
기정	중로	1	48	20	국지	2,555	대2-17	대2-17	일반	산2-12	69.11.3	인천광역시고시 제1991-97호
변경	중로	1	48	20	국지	2,555	대2-17	대2-17	일반	산2-12		
기정	중로	1	293	20	국지	305.5	중1-48	중1-12	일반	98-33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변경	중로	1	293	20	국지	305.5	중1-48	중1-12	일반	98-33		
기정	중로	2	132	15	국지	162	중1-48	중1-138	일반	98-57	69.11.3	인천광역시고시 제2000-33호
변경	중로	2	132	15	국지	162	중1-48	중1-138	일반	98-57		

○ 도로변경(경미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1-12호선	중로 1-12호선	○선형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중로 1-48호선	중로 1-48호선	○선형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중로 1-293호선	중로 1-293호선	○선형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중로 2-132호선	중로 2-132호선	○선형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4.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공 고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19-981호

공 고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에 따라 소유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요청하여 동법 제24조의2 제3항 제4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1. 공고제목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사항 공고
- 2. 공고기간 : 2019. 7. 29. ~ 2019. 8. 12.
- 3. 공고내용
 - 운행정지 차량 내역

등록번호	소유자	사용본거지	운행정지 명령일자	운행정지 사유
58하8498	(주)조이***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87번길 30	2019.07.17.	소유자 요청
63하2743	(주)조이***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87번길 30	2019.07.17.	소유자 요청
67호7015	(주)조이***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87번길 30	2019.07.17.	소유자 요청
72호1107	(주)조이***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87번길 30	2019.07.17.	소유자 요청
71호8984	(주)조이***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87번길 30	2019.07.17.	소유자 요청
인천80아 1251	(주)케이***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165번길 15	2019.07.17.	소유자 요청

- 4.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

2019년 7월 29일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19-100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 재공고·열람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3류654호선, 사업명: 중촌경로당 진입도로 개설공사)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9. 7. 29.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406-3번지 ~ 1436-6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3류654호선)
- 명칭: 중촌경로당 진입도로 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연장(L)=439m, 폭원(B)=12m

4.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인천광역시중구청장
-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관동1가, 중구청)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2020.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불임

8.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

○ 도로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654	12	집산 도로	439	중산동 1406-3 (대1-502)	중산동 1406-6 (중1-653)	일반 도로	-	2016.11.07. (인증고 2016-133호)	
변경	중로	3	654	12	집산 도로	439	중산동 1406-3 (대1-502)	중산동 1406-6 (중1-653)	일반 도로	-	-	경미한 변경

○ 도로변경(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 경 사 유
중로3-654호선	중로3-654호선	○ 경미한 도로선형 일부구간 변경 및 비탈면 반영	○ 지형사정 등에 따른 경미한 도로선형 조정 및 비탈면 등 부분 경미한 변경

9.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10. 열람 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청(기반시설과, 032-760-8953, 인천 중구 운남서로 100, (운남동, 영중복합청사))
- 인천광역시 중구청(도시개발과, 032-760-7517, 인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11. 관계 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놓은 도서와 같음)

수용되거나 사용될 토지의 세목조사

○ 중천경로당 진입도로 개설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m ²	면적 m ²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종류	
1	인천 중구 중산동	1363-2	도	6,404	94	공	인천광역시				
2	인천 중구 중산동	1363-6	도	26	26	공	인천광역시				
3	인천 중구 중산동	1363-7	도	151	21	공	인천광역시				
4	인천 중구 중산동	1406-3	도	2,797	75	공	인천광역시				
5	인천 중구 중산동	산377	도	7,509	488	국	국토교통부				
6	인천 중구 중산동	1369-3	도	296	78	공	인천광역시				
7	인천 중구 중산동	1406-19	도	314	314	공	인천광역시				
8	인천 중구 중산동	1410-3	대	25	25	공	인천광역시				
9	인천 중구 중산동	1410-2	도	8	8	김*호	인천 중구 중산동 ***				
10	인천 중구 중산동	1369-1	대	555	7	도*수	인천 중구 운남서로7, ***	중구농업 협동조합	인천 중구 운남로166(공항신도시지점)	지상권 근저당권	
11	인천 중구 중산동	1369-6	도	73	5	김*호	인천 중구 중산동 ***				
12	인천 중구 중산동	1411-1	도	10	10	강*신	옹진군 영종면 중산리 ***				
13	인천 중구 중산동	1412-1	대	491	7	이*자	인천 중구 중산동 ***				
						강*경	인천 중구 중산동 ***				
14	인천 중구 중산동	1412-8	도	8	6	이*자	인천 중구 중산동 ***				
						강*경	인천 중구 중산동 ***				
15	인천 중구 중산동	산231	임	667	125	김*옥	서울 종로구 내수동 95 파크팰리스 ***				
16	인천 중구 중산동	1412-2	도	53	3	강*신	옹진군 영종면 중산리 ***				
17	인천 중구 중산동	1411-2	전	202	179	이*자	인천 중구 중산동 ***				
						강*경	인천 중구 중산동 ***				
18	인천 중구 중산동	1411-3	도	20	2	강*신	옹진군 영종면 중산리 ***				
19	인천 중구 중산동	산231-3	임	1,890	114	성*현	서울 성동구 서울숲 2길 32-14, ***				
						박*영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33 현대아파트 ***				
20	인천 중구 중산동	산231-4	임	1,735	529	성*현	서울 성동구 서울숲 2길 32-14, ***				
						박*영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33 현대아파트 ***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면적 비율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종류	
21	인천 중구 중산동	1417-1	대	850	25	성*현	서울 성동구 서울숲 2길 32-14, ***				
						박*영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33 현대아파트 ***				
22	인천 중구 중산동	1417-14	임	40	40	하*규	인천 중구 운중로107번길 ***	은누리 새마을금고	인천 남구 한나루로426	지상권 근저당권	
23	인천 중구 중산동	1417-12	대	659	14	하*규	인천 중구 운중로107번길 ***	은누리 새마을금고	인천 남구 한나루로426	근저당권	
24	인천 중구 중산동	1419-3	도	7	7	이*순	인천 중구 도원동 ***				
						박*임	인천 중구 도원동 ***				
						박*섭	인천 중구 도원동 ***				
						박*섭	인천 중구 도원동 ***				
25	인천 중구 중산동	1419-4	전	214	75	이*금	인천 중구 운중로107번길 ***	동암신용 협동조합	인천 부평구 동암남로15	지상권 근저당권	채무자 서*석
26	인천 중구 중산동	1417-15	도	51	14	이*란	인천 남동구 구월동 ***				
27	인천 중구 중산동	1418-1	전	1,041	231	박*애	인천 남구 용경공원로33, ***	남동농업 협동조합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14-1(신간석지점)	지상권 근저당권	
						박*미	인천 남구 용경공원로33, ***	남동농업 협동조합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14-1(신간석지점)	지상권 근저당권	
						박*경	인천 남동구 장아산로157, ***	남동농업 협동조합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14-1(신간석지점)	지상권 근저당권	
						박*분	인천 남구 용경공원로33, ***	남동농업 협동조합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14-1(신간석지점)	지상권 근저당권	
28	인천 중구 중산동	1417-10	도	65	48	정*화	경기 안산시 상록구 조구나리길 ***	주식회사한국 씨티은행	서울 중구 청계천로24(이매동지점)	근저당권	
29	인천 중구 중산동	산233-1	임	1,388	21	김*중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5 진흥아파트 7-1004	주식회사 우리은행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서빙고동지점)	근저당권	
30	인천 중구 중산동	1417-8	대	1,054	165	정*화	경기 안산시 상록구 조구나리길 ***	주식회사한국 씨티은행	서울 중구 청계천로24(이매동지점)	근저당권	
31	인천 중구 중산동	산389	도	1,061	785	국	국토교통부				
32	인천 중구 중산동	1417-9	임	203	203	정*화	경기 안산시 상록구 조구나리길 ***	주식회사한국 씨티은행	서울 중구 청계천로24(이매동지점)	근저당권	
33	인천 중구 중산동	1428-1	대	374	32	홍*길	인천 중구 운중로107번길 ***	주식회사한국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서울 중로구 중로47 (리테일금융서비스부리테일금융운영)	근저당권	
34	인천 중구 중산동	1428-3	도	10	10	홍*길	인천 중구 운중로107번길 ***				
35	인천 중구 중산동	1428	대	374	1	한*미	서울 서대문구 수색로42, ***	연회신용 협동조합	서울 서대문구 연회로64-22	근저당권	
36	인천 중구 중산동	1428-2	도	53	32	이*순	인천 중구 도원동 ***				
						박*임	인천 중구 도원동 ***				
						박*섭	인천 중구 도원동 ***				
						박*섭	인천 중구 도원동 ***				
37	인천 중구 중산동	1429-2	도	20	11	추*숙	인천 중구 운중로 ***				

필면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필면 면적	소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38	인천 중구 중산동	1429-1	전	2,486	113	추*숙	인천 중구 운중로 ***	추*부	인천 중구 원바위로14, ***	근저당권	
39	인천 중구 중산동	1436-4	도	10	9	박*섭	인천 중구 운남리 ***				
						정*환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				
						정*민	서울 마포구 서교동 ***	재단법인 신용보증 재단중앙회	대전 서구 한밭대로713 14층, 15층	가압류	
						정*란 미*인 정경주	서울 관악구 신림동 1727 입광관악파크아파트 *** 서울 관악구 신림동 1727 입광관악파크아파트 ***				
40	인천 중구 중산동	1436-3	대	541	30	박*궁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				
41	인천 중구 중산동	1436-10	임	253	253	박*궁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				
42	인천 중구 중산동	1436-6	임	1,785	475	조*애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6, ***				
43	인천 중구 중산동	1436-5	도	8	8	박*섭	인천 중구 운남리 ***				
						정*환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				
						정*민	서울 마포구 서교동 ***	재단법인신용 보증재단중앙회	대전 서구 한밭대로713 14층, 15층	가압류	
						정*란 미*인 정경주	서울 관악구 신림동 1727 입광관악파크아파트 *** 서울 관악구 신림동 1727 입광관악파크아파트 ***				
44	인천 중구 운남동	산32-2	임	298	74	이*근	옹진군 영종면 중산리 ***				
45	인천 중구 운남동	6	대	77	19	이*옥	인천 중구 운남로248번길 73, ***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29 (강북신용지원단)	가압류	
								중구농협 협동조합	인천 중구 운남동 433-3(신홍지점)	지상권 근저당권	
								조*숙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400, ***	근저당권	
46	인천 중구 운남동	6-1	전	47	47	이*옥	인천 중구 운남로248번길 73, ***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29 (강북신용지원단)	가압류	
								중구농협 협동조합	인천 중구 운남동 433-3(신홍지점)	지상권 근저당권	
47	인천 중구 운남동	6-2	도	160	55	김*민	인천 중구 운남로248번길 ***	중구농협 협동조합	인천 중구 운남동 433-3(신홍지점)	지상권 근저당권	채무자 이*옥
48	인천 중구 운남동	7	전	714	77	차*성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75-15 ***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84 (구월동종합금융센터)	지상권 근저당권	
49	인천 중구 운남동	8-2	전	139	139	이*순	인천 중구 중산동 ***				
50	인천 중구 운남동	8-1	도	13	1	이*우	영종면 중산리				
51	인천 중구 운남동	9-2	묘	362	171	한*숙	서울 강서구 들촌동 564-7 삼형그래스빌 ***				
52	인천 중구 운남동	12-6	전	156	156	구*옥	인천 중구 운중로107번길 ***				
53	인천 중구 운남동	12-4	대	814	97	구*옥	인천 중구 운중로107번길 ***	중구농협 협동조합	인천 중구 운남로166(용유지점)	근저당권	채무자 차*옥

인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점 면적	편입 면적	소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54	인천 중구 운남동	12-2	도	13	13	차*옥	인천 중구 운남동 ***				
55	인천 중구 운남동	12-7	전	2	2	구*옥	인천 중구 운중로107번길 ***				
56	인천 중구 운남동	12-3	대	542	13	김*원	인천 계양구 장제로743번길 14, ***	인천서부 새마을금고	인천 서구 율도로84	근저당권	
57	인천 중구 운남동	1434-3	도	1,012	231	국	농림축산식품부				
58	인천 중구 운남동	22-1	대	1,756	11	차*	인천 중구 운중로***	고양동부 새마을금고	경기 고양시 덕양구 원흥4로7	근저당권	
									인천광역시 중구	근저당권	
59	인천 중구 운남동	22-15	전	23	23	차*	인천 중구 운중로***				
합 계				41,909	5,847						

수용되거나 사용될 물건의 세목조사(1)

○ 중촌경로당 진입도로 개설공사

번호	소재지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인천 중구 중산동 1406-19	울타리	E.G.I	14.80	m	이*화	인천 연수구 센트럴로 160, ***동 ****호	
		울타리	능형망	8.70	m			
2	인천 중구 중산동 1369-1	울타리	매쉬	2.00	m	도*수	인천 중구 운남서로 7, ***동 ****호	
	인천 중구 중산동 1369-6	콘크리트포장	T=20cm	29.84	m2	김*호	인천 중구 중산동 ****	
3	인천 중구 중산동 1417-12, 1417-14	콘크리트포장	T=20cm	56.27	m2	하*규	인천 중구 운중로 107번길 **	
4	인천 중구 중산동 1417-8	가건물	벽돌	33.50	m2	정*화	경기 안산시 상록구 조구나리길 ***	
		콘크리트포장	T=20cm	38.73	m2			
		조경석		47.50	m2			
5	인천 중구 중산동 1428-1	콘크리트포장	T=20cm	30.75	m2	홍*길	인천 중구 운중로 107번길 **	
	담장	벽돌	20.00	m				
6	인천 중구 운남동 6	옹벽	콘크리트	3.00	m	이*욱	인천 중구 운남로 248번길 73, *동 ***호	
7	인천 중구 중산동 1428	울타리	조경수	10.20	m	한*미	서울 서대문구 수색로 42, ***호	
8	인천 중구 운남동 12-4	콘크리트포장	T=20cm	130.44	m2	구*욱	인천 중구 운중로 107번길 ***	
		옹벽	석축+방호벽	2.20	m			
9	인천 중구 중산동 1429-1	콘크리트포장	T=20cm	23.14	m2	추*숙	인천 중구 중산동 ****	
10	인천 중구 중산동 1436-10	콘크리트포장	T=20cm	53.98	m2	박*궁	서울 도봉구 상계동 ****-***	
10	인천 중구 중산동 1436-10	담장	벽돌	25.60	m	박*궁	서울 도봉구 상계동 ****-***	
		울타리	목재	21.60	m			
		창고	조립식	4.20	m2			
11	인천 중구 운남동 22-1, 22-15	아스팔트포장	T=15cm	20.67	m2	차*	인천 중구 운중로 ***	

수용되거나 사용될 물건의 세목조사(2)

○ 중촌경로당 진입도로 개설공사

번호	소재지	지번	측점	방향	번호	소유자	비고
1	중구 중산동	1406-19	NO.01 + 08.860	우		한국전력	
2	중구 중산동	1411-2	NO.03 + 15.960	좌	8022Q×391 운복간80R9R1	한국전력	이설
3	중구 중산동	산389	NO.13 + 01.310	좌	8022Q×361 영종간28L5R1	한국전력	이설
4	중구 운남동	7	NO.14 + 18.590	우	8022Q×355 영종간28L5	한국전력	이설
5	중구 운남동	8-1	NO.15 + 15.890	좌		한국전력	
6	중구 중산동	1429-2	NO.16 + 14.960	좌	8022Q×354 영종간28L4	한국전력	
7	중구 운남동	1434-3	NO.18 + 09.620	좌	8022Q×345 영종간28L3	한국전력	이설
8	중구 중산동	산377	NO.18 + 13.980	좌	8022Q×343 영종간175L2R1	한국전력	이설
9	중구 중산동	산377	NO.19 + 12.920	우	영종간 175 L2	한국전력	이설
10	중구 중산동	산377	NO.19 + 17.520	우	8022Q×331 영종간28L2	한국전력	이설
11	중구 중산동	1369-3	NO.02 + 15.630	좌		KT	이설
12	중구 중산동	1411-2	NO.03 + 18.960	좌		KT	이설
13	중구 중산동	1417-10	NO.08 + 15.570	우		KT	이설
14	중구 중산동	산389	NO.09 + 13.410	우		KT	이설
15	중구 중산동	산389	NO.10 + 16.600	좌		KT	이설
16	중구 중산동	산389	NO.12 + 00.000	좌		KT	이설
17	중구 중산동	산389	NO.13 + 02.050	좌		KT	이설
18	중구 운남동	7	NO.14 + 18.660	우		KT	이설
19	중구 중산동	1429-2	NO.16 + 15.810	좌		KT	이설
20	중구 중산동	산377	NO.18 + 12.890	좌		KT	이설
21	중구 중산동	산377	NO.18 + 13.220	좌		KT	이설
22	중구 중산동	산377	NO.19 + 14.170	우		KT	이설
23	중구 운남동	22-15	NO.21 + 15.600	우		KT	이설
24	중구 운남동	1436-6	NO.21 + 18.980	좌		KT	이설
25	중구 중산동	1417-8	NO.11 + 02.850	우		한국전력	맨홀
26	중구 중산동	1417-8	NO.11 + 18.710	우		상수도사업소	이설

번호	소재지	지번	측점	방향	번호	소유자	비고
27	중구 중산동	산337	NO.01 + 05.570	좌	영종210호	인천공항소방서	이설
28	중구 운남동	8-2	NO.15 + 15.390	좌	영종12호	인천공항소방서	이설
29	중구 중산동	산231-3	NO.04 + 00.330	우			분묘
30	중구 중산동	산231-3	NO.04 + 02.950	우			분묘
31	중구 중산동	산231-4	NO.05 + 19.000	우			분묘
32	중구 중산동	산231-4	NO.06 + 02.780	우			분묘
33	중구 중산동	산32-2	NO.13 + 04.090	우			분묘
34	중구 중산동	산32-2	NO.13 + 06.920	우			분묘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19-1011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 및 사업인정에 관한 공고·열람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의 시행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른 실시계획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인정에 관하여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7. 29.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치: 인천 중구 율목동 249-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명칭: 율목동 공영주차장(1단계)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면적(A) = 658.1m

4.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관동 1가)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2019.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99조에 따름.

8.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장소에 제출

9. 열람 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청(도시개발과, 032-760-7518, 인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 을목동 행정복지센터(032-760-6180, 인천 중구 서해대로483번길 3)

10. 관계서류: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붙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사업명: 율목동 공영주차장(1단계) 조성공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외의 권리자			비고	
				대장 면적	면입 면적	주소	성명	지분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인천광역시 중구 율목동	249-5	대	93.2	93.2	인천광역시 중구 율목동 8번길 *~**	윤천*		목적 : 고속도로 지하터널 소유 범위 : 평면적범위 93.2㎡중 서쪽91㎡ 수직적범위 평균해수면아래		구분지상권 설정		
2	인천광역시 중구 율목동	249-19	대	61.2	61.2	인천광역시 중구 ***~**	정덕*		목적 : 고속도로 지하터널 소유 범위 : 평면적범위 61.2㎡중 동쪽35㎡ 수직적범위 평균해수면아래 3.84미터부터 25.59미터사이 존속기간 고속도로 지하터널 존속시까지 지상권자 국 관리청 국토교통부 도면 제2017-946호 지료 존속기간동안 총지료 금7,133,350원		구분지상권 설정		
3	인천광역시 중구 율목동	249-33	대	106.1	106.1	인천광역시 중구 율목동 ***~**	김윤*	88.6/ 106.1					
						국(기획재정부)	국유지	17.8/ 106.1					
4	인천광역시 중구 율목동	250-1	대	10.1	10.1	국(기획재정부)	국유지	236.9/ 301.8					
						인천광역시	공유지	8.6/ 301.8					
						인천광역시	공유지	56.3/ 301.8					
5	인천광역시 중구 율목동	250-2	대	25.8	25.8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지						
6	인천광역시 중구 율목동	250-5	대	3.6	3.6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이화로*, ***동 ***호	유영*		목적 : 고속도로 지하터널 소유 범위 : 평면적범위 3.6㎡중 3.6㎡전부 수직적범위 해수면아래 3.3미터부터 25.05미터사이 존속기간 고속도로 지하터널 존속시까지 지료 존속기간동안 총지료 금837,000원 지상권자 국 관리청 국토교통부 도면 제2016-759호		구분지상권 설정		
7	인천광역시 중구 율목동	250-6	대	33.9	33.9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이화로*, ***동 ***호	유영*		목적 : 고속도로 지하터널 소유 범위 : 평면적범위 33.9㎡중 33.9㎡전부 수직적범위 해수면아래 3.3미터부터 25.05미터사이 존속기간 고속도로 지하터널 존속시까지 지료 존속기간동안 총지료 금7,881,750원 지상권자 국 관리청 국토교통부 도면 제2016-760호		구분지상권 설정		
8	인천광역시 중구 율목동	250-7	대	0.7	0.7	국(기획재정부)	국유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외의 권리자				비고
				대장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지분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및 내용		
9	인천광역시 중구 숭목동	250-13	대	37.7	37.7	인천광역시 중구 ***-**	정덕*		목적 : 고속도로 지하터널 소유 범위 : 평면적범위 37.7㎡중 동쪽34㎡ 수직적범위 해수면아래 3.84미터부터 25.59미터사이 존속기간 고속도로 지하터널 존속시까지 지료 존속기간동안 총지료 금6,929,540원 지상권자 국 관리청 국토교통부 도면 제2017-947호			구분지상권 설정	
10	인천광역시 중구 숭목동	250-14	대	1.3	1.3	인천광역시	공유지						
11	인천광역시 중구 숭목동	250-15	대	176.8	16.6	서울 은평구 구산동 *-**	오용*	1/15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길 ***(여의도동)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취급지점 대출실행 센터	근저당권		
						파천시 별양동 * 주공아파트 ***동 ***호	정희*	1/15					
						서울 구로구 구로동 ***-**	김찬*	1/15					
						서울 중랑구 면목동 *** 용마금호타운 *동 ***호	김기*	1/15					
						인천 계양구 효성동 ***-**	박용*	1/15					
						인천 남구 용현동 ***-** 신성빌라 *-***호	장인*	1/15					
						인천 연수구 연수동 ***-* *층 ***호	이기*	1/15					
11	인천광역시 중구 숭목동	250-15	대	176.8	16.6	서울 강동구 상일동 *** 주공아파트 ***동 ***호	이순*	1/15	목적 : 고속도로 지하터널 소유 범위 : 평면적범위 176.8㎡중 동쪽139㎡ 수직적범위 평균해수면아래 3.3미터부터 25.05미터사이 존속기간 고속도로 지하터널 존속시까지 지료 존속기간동안 총지료 금22,507,470원 지상권자 국 관리청 국토교통부 도면 제2017-960호	구분지상권 설정			
						인천 남동구 만수동 ***-* 삼환아파트 ***동 ***호	이창*	1/15					
						서울 은평구 역촌동 **-** 경우빌라 ***호	신경*	1/15					
						서울 은평구 신사동 ***-***	김진*	1/15					
						서울 은평구 대조동 **-** *층 *호	신덕*공유지	1/15					
						서울 은평구 대조동 ***-* 아주빌라 ***호	전태*	1/15					
						서울 은평구 신사동 *-**	양정*	1/15					
						경기 고양시 일산구 지영동 ***-*	신영*	1/15					
12	인천광역시 중구 숭목동	250-23	대	35.0	35.0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지						
13	인천광역시 중구 숭목동	250-26	대	381.9	193.1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지	11/ 255.8					
						국(기획재정부)	국유지	230/ 255.8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외의 권리자			비고
				대장 면적	권입 면적	주소	성명	지분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인천광역시 중구 을목동 ***-**-**	유인*	12/ 255.8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 신한빌라 *동 ***호 1994년11월4일 인천지방법원의 가압류 결정(94카단19247)	김상*	유인*지분 가압류	
									인천 북구 임학동 *-**-** 1994년11월24일 인천지방법원의 가압류 결정(94카단21147)	오성*	유인*지분 가압류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 소관 인천지법 1995년4월10일 인천지방법원의 가압류 결정(95카단7576)	한국 보증보험 주식회사	유인*지분 가압류	
									인천 남구 주안동 ***-**-** 골든빌라 비동 302호 1995년6월12일 인천지방법원의 가압류 결정(95카단12655)	정병*	유인*지분 가압류	
									서울 강남구 대치동 ***-**-** 신한빌딩14층 1997년4월2일 인천지방법원의 가압류 결정(97카단7878)	교요롱 할부금융 주식회사	유인*지분 가압류	
									인천 중구 선화동 **-**-** 1998년6월8일 인천지방법원의 가압류 결정(98카단29277)	신선 새마을 금고	유인*지분 가압류	
									인천 중구 답동 * 공동담보 중구 을목동 250-26(건) 1987년5월27일 부기 공동담보 분할로인하여 25C-31에이기한 대422.7㎡, 250-32에 이기한 대37.6㎡, 250-33에 이기한 대 3.4㎡의 함께 공동담보 1989년11월4일 부기	답동신용 협동조합	유인*지분 가압류	
									인천 남구 주안동 ***-**-** 공동담보 동소동번지의 건물	이선*	유인*지분 가압류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 공동담보 동번지의건물	이병*	유인*지분 가압류	
									광명시 철산동 **-**-** 공동담보목록 제238호	권병*	유인*지분 가압류	
인천 남구 주안동 ***-**-**경인상가아파트 *동***호 공동담보 동소동번지의건물	이건*	유인*지분 가압류										
						인천광역시 중구 도원동 **-**-**	한명*	2.8/ 255.8	2006년4월6일 압류 (정세과-5175)	국 치본청 인천세무서	한명*지분 압류	
14	인천광역시 중구 을목동	250-39	대	39.8	39.8	국(기획재정부)	국유지	236.9/ 301.8				
						인천광역시	공유지	8.6/ 301.8				
						인천광역시	공유지	56.3/ 301.8				
계				934.8	658.1							

수용하거나 사용할 건물 등의 세목

○ 사업명: 율목동 공영주차장(1단계) 조성공사

연번	소재지	지번	종류	구조 및 규격	단위	수량	소유자		소유권 외의 권리자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인천 율목동	250-26	건물 주택	브릭조 기와	m ²	27.12	-	소유자 미상				
			건물 창고	브릭조 슬레이트	m ²	3.80						
			건물 창고	브릭조 스라브	m ²	5.41						
			건물 주택	브릭조 슬레이트	m ²	17.04						
			건물 창고	샌드위치 판넬	m ²	2.16						
2	인천 율목동	249-5	건물 주택	브릭조 기와	m ²	41.27	인천광역시 중구 율목동 ***	윤천*				
			건물 주택	즈릭조 기와	m ²	18.6						
			건물 창고	브릭조 슬레이트	m ²	3.08						
			건물 마당	스라브	m ²	27.23						
			대문	철재 H=2.0m	m	1.8						
3	인천 율목동	249-19, 250-13	건물 주택	목조 기와	m ²	34.96	인천광역시 중구 율목동 ****-***	정덕*				
			건물 주택	샌드위치 판넬	m ²	16.23						
			건물 주택	브릭조 스라브	m ²	10.51						
			건물 부설 창고	브릭조 스라브	m ²	17.30						
			건물 마당	샌드위치 판넬	m ²	10.18						
			건물 마당	스라브	m ²	8.82						
			건물 마당	슬레이트	m ²	7.60						
			대문	철문 H=2.0m	m	1.8						
4	인천 율목동	249-33	건물 주택	목조 슬레이트	m ²	31.15	인천광역시 중구 율목동 ****-***	김윤*				
			건물 주택	목조 슬레이트	m ²	8.75						
			건물 주택	목조 슬레이트	m ²	11.10						
			건물 마당	슬레이트	m ²	15.38						